P61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자격>

품목명	가입자격
비가림시설(포도, 대추, 참다래)	비가림시설면적이 200㎡ 이상
농업용 시설물 및 시설작물, 버섯재배사 및 버섯작물, 녹두, 생강, 참깨 / 종합위험 사과, 배, 단감, 떫은감	농지 면적이 300㎡ 이상
농업수입안정보험	농지 면적이 1,000㎡ 이상

P62

② 식량작물 (11개 품목)

벼, 밀, 보리, 감자, 고구마, 옥수수, 콩, 팥, 메밀, 귀리, 녹두

③ 채소작물 (14개 품목)

양파, 마늘, 고추, 양배추, 배추, 무, 파, 당근, 브로콜리, 단호박, 시금치(노지), 양상추, 수박(노지), 생강

④ 특용작물 (4개 품목)

인삼, 오디, 차(茶), 참깨

2) 보험사업 실시지역

② 재해보험사업자는 시범사업 실시지역의 추가, 제외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범사업은 전국적으로 보험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일부 지역에서 보험설계의 적정성, 사업의 확대 가능성, 농가의 호응도 등을 파악하여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전국적 본 사업 실시 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3년차 이상 시범사업 품목 중에서 농업재해보험심의회에 심의에 따라 본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다.

④ 한편,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 대상 농작물 등이라 하더라도 보험화가 곤란한 특정 품종, 특정 재배방법, 특정시설 등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과 협의하여 보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보험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P63 <보험 대상 품목별 대상 재해>

구분	품목	대상 재해
적과전 종합위험	사과, 배, 단감, 떫은감	(적과전) 자연재해 · 조수해(鳥獸害) · 화재
		(적과후) 태풍(강풍) · 우박 · 화재 · 지진 · 집중호우 · 일소피해 · 가을동상해
수확전 종합위험	무화과	(7.31일 이전) 자연재해 · 조수해(鳥獸害) · 화재 (8.1일 이후) 태풍(강풍) · 우박
	복분자	(5.31일 이전) 자연재해 · 조수해(鳥獸害) · 화재 (6.1일 이후) 태풍(강풍) · 우박(특약) 수확기 부보장

특정위험	인삼	동일
종합위험	사과	자연재해 · 조수해(鳥獸害) · 화재 · 병충해(탄저병)
	배, 단감, 떫은감	자연재해 · 조수해(鳥獸害) · 화재
	매실, 자두, 유자, 살구 감귤(온주밀감, 만감류)	자연재해 · 조수해(鳥獸害) · 화재
	포도, 참다래, 대추	자연재해 · 조수해(鳥獸害) · 화재
	복숭아	자연재해 · 조수해(鳥獸害) · 화재 · 병충해(세균구멍병)
	벼	자연재해 · 조수해(鳥獸害) · 화재, 병충해(특약)
	밀, 고구마, 옥수수, 사료용 옥수수, 콩, 양배추, 차, 오디, 밤, 오미자, 양파, 무, 파, 단호박, 당근, 시금치(노지), 메밀, 브로콜리, 팥, 보리, 조사료용 벼, 귀리, 양상추, 두릅, 블루베리, 수박(노지), 참깨, 녹두, 생강	자연재해 · 조수해(鳥獸害) · 화재
	감자	자연재해 · 조수해(鳥獸害) · 화재, 병충해
	배추	자연재해 · 조수해(鳥獸害) · 화재 · 병충해(무름병)
	마늘	자연재해 · 조수해(鳥獸害) · 화재
	호두	자연재해 · 조수해(鳥獸害) · 화재
	고추	자연재해 · 조수해(鳥獸害) · 화재, 병충해
	해가림시설(인삼)	자연재해 · 조수해(鳥獸害) · 화재
	농업용시설물(버섯재배사, 부대시설)	자연재해 · 조수해(鳥獸害), 화재(특약)
	비가림시설(포도, 대추, 참다래)	자연재해 · 조수해(鳥獸害), 화재(특약)
	시설작물, 버섯작물	자연재해 · 조수해(鳥獸害), 화재(특약)

P65 <보험 대상 품목별 보장 수준> 적과전 종합위험 ~ 특정위험까지 동일

구분	품목	보장 수준(보험가입금액의 %)				
		60	70	80	85	90
종합위험	참다래, 매실, 자두, 포도, 복숭아, 감귤, 벼, 밀, 보리, 고구마, 옥수수, 콩, 팥, 차, 오디, 밤, 대추, 오미자, 양파, 감자, 마늘, 배추(봄, 가을 제외), 무(고랭지, 월동), 대파, 단호박, 시금치(노지), 살구, 당근(가을, 월동), 메밀, 양배추	O	O	O	O	O
	유자, 호두, 두릅, 블루베리, 배추(봄, 가을), 가을무(일반무), 쪽파(실파), 양상추, 고랭지당근, 귀리, 수박(노지), 녹두, 생강, 참깨	O	O	O	-	-

	이외 품목	동일

P66 <농작물재해보험 판매기간>

품목	판매기간
(적과전 종합위험) 사과, 배, 단감, 떫은감	2월
(수확전 종합위험) 사과, 배, 단감, 떫은감	11월
농업용시설물 및 시설작물(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고추, 호박, 국화, 장미, 파프리카, 멜론, 상추, 부추, 시금치, 배추, 가지, 파, 무, 백합, 카네이션, 미나리, 쑥갓, 감자)	2~11월
버섯재배사 및 버섯작물(양송이, 새송이, 표고, 느타리)	2~11월
밤, 대추, 고추, 호두, 수박(노지), 감귤	4~5월
고구마, 옥수수, 사료용 옥수수, 벼, 조사료용 벼	4~6월
단호박	3~5월
감자	(봄재배) 4~5월, (고랭지재배) 5~6월, (가을재배) 8~10월
배추	(봄) 3~4월, (고랭지) 5~7월, (가을) 8~9월, (월동) 9~10월
무	(가을) 8~9월, (고랭지) 5~7월, (월동) 8~10월
파	(대파) 4~6월, (쪽파, 실파) 9~10월
참다래, 콩, 생강	6~7월
팥, 녹두	6~8월
참깨, 고랭지당근	5~6월
인삼	5월~10월
당근	7~9월
양상추	7~8월
양배추, 메밀	8~9월
브로콜리	8~10월
마늘	(특약)9월 (난지형)10월~11월 (한지형)10월~11월)
차	9~10월
양파	10~11월
시금치	9~11월
밀, 보리, 귀리	10~12월
포도, 자두, 매실, 복숭아, 오디, 복분자, 오미자, 무화과, 살구, 두릅, 블루베리	11월
유자	11~12월

P69 <손해율 및 가입연수에 따른 할인·할증률>

손해율	평가기간				
	1년	2년	3년	4년	5년
20%미만	-10%	-13%	-18%	-25%	-30%
20%이상 40%미만	-8%	-10%	-13%	-18%	-25%
40%이상 60%미만	-5%	-8%	-10%	-13%	-18%
60%이상 80%미만	-4%	-5%	-8%	-10%	-13%
80%이상 120%미만	-	-	-	-	-
120%이상 150%미만	2%	3%	5%	6%	7%
150%이상 180%미만	3%	5%	6%	7%	8%
180%이상 200%미만	5%	6%	7%	8%	9%
200%이상 250%미만	6%	7%	8%	9%	11%
250%이상 300%미만	7%	8%	9%	11%	13%
300%이상 350%미만	8%	9%	11%	13%	17%
350%이상 400%미만	9%	11%	13%	17%	25%
400%이상 450%미만	11%	13%	17%	25%	33%
450%이상 500%미만	13%	17%	25%	33%	42%
500%이상	17%	25%	33%	42%	50%

※ 손해율 = 최근 5개년 보험금 합계 ÷ 최근 5개년 순보험료 합계

P72 4) 보험기간 적용

보험기간은 농작물재해보험이 보장하는 기간을 말하며, 특정위험방식·종합위험방식의 품목별로 생육기를 감안하여 보험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다. 보험기간의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보험약관에 있다.

P75 <정부의 농가부담보험료 지원 비율>

3. 정부의 지원

다만, 과수 4종 품목(사과, 배, 단감, 떫은감)은 보장 수준별로 33% ~ 60%, 벼는 33% ~ 65%. 콩, 감자, 고구마, 보리, 옥수수, 마늘, 양파, 양배추, 포도, 무, 복숭아, 감귤 품목은 47% ~ 60% 차등 보조한다.

구분	품목	보장 수준(%)				
		60	70	80	85	90
국고 보조율(%)	사과, 배, 단감, 떫은감 / 벼	65	60	50	38	33
	콩, 감자, 고구마, 보리, 옥수수, 마늘, 양파, 양배추, 포도, 배추, 무, 복숭아, 감귤(만감류)	60	55	50	48	47

P82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 차액보험료를 환급한다.

차액보험료 = (감액분 계약자부담보험료 X 감액미경과비율) – 미납입보험료 ※ 감액분 계약자부담보험료는 감액조정후 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계약자부담보험료와 감액조정전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계약자부담보험료와의 차액

P83 ㉠ 보험료의 구성

ⓐ 정부보조보험료는 순보험료의 경우 보장수준별로 33% ~ 65% 차증 지원, 부가보험료는 100%를 지원한다.

P87 ㉣ 과거수확량 자료가 있는 경우

※ 과거 적과후착과량: 21년 적과후착과량부터 아래 상·하한 적용 단, 상한의 경우 가입 당해를 포함하여 과거 5개년 중 3년 이상 가입 이력이 있는 과수원에 한하여 적용 · 적용가능 예시: 2022년(O), 2024년(O), 2026년(O) → 3년 가입완료(상한적용 대상) · 적용불가 예시: 2025년(O), 2026년(O) → 2년 가입완료(상한적용 제외)

P87 나. 종합위험방식 품목

1) 대상품목

복숭아, 자두, 매실, 살구, 오미자, 밤, 호두, 유자, 포도, 사과, 배, 단감, 떫은감, 대추, 참다래, 복분자, 무화과, 오디, 감귤(만감류), 감귤(온주밀감류), 두릅, 블루베리 (22개 품목)

2) 주요 특징

과수작물의 종합위험방식 상품은

①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방식(복숭아, 자두, 매실, 살구, 오미자, 밤, 호두, 유자, 감귤(만감류), 사과, 배, 단감, 떫은감(13개 품목)

②③④ 동일

3) 상품 내용

㉠ 보상하는 재해

구분	품목	보상하는 재해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방식	복숭아, 자두, 밤, 매실, 오미자, 유자, 호두, 살구, 감귤(만감류), 사과, 배, 단감, 떫은감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 병충해(복숭아, 사과만 해당)

P89 ⓓ 병충해 세균구멍병 외 추가

○ 자연재해성 탄저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사과만 해당)

- 과실에 주로 발생하지만 때로는 가지나 줄기에도 발생한다.

- 과실의 표면에 갈색의 작은 반점이 형성 확대되면서 병반 중앙부가 움푹해진다.

- 병반 중앙부는 동심 윤문의 흑색 포자층이 밀생하며, 다습 시에는 병반위에 담홍색의 점액(분생포자)이 분비된다. 갑자기 부패하거나 무름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병반이 움푹 들어가는 것이 겹무늬썩음병과 다르다.

- 과실에 갈색의 원형 반점이 형성되어 1주일 후에는 직경이 20~30㎜로 확대되며 병든 부위를 잘라보면 과심방향으로 과육이 원뿔 모양으로 깊숙이 부패하게 된다.

- 과실표면의 병반은 약간 움푹 들어가며 병반의 표면에는 검은색의 작은 점들이 생기고 습도가 높을 때 이 점들 위에서 담홍색의 병원균 포자덩이가 쌓인다.

※ 보상하는 재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손해방지비용을 추가로 지급한다. 다만, 방제비용, 시설보수비용 등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보상하지 않는 손해

ⓙ 보장하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동녹(과실에 발생하는 검은 반점병) 등 간접손해[사과, 배, 단감, 떫은감에 해당]

ⓚ 식물방역법 제36조(방제명령 등)에 의거 금지 병해충인 과수 화상병 발생에 의한 폐원으로 인한 손해 및 정부 및 공공기관의 매립으로 발생한 손해[사과, 배, 단감, 떫은감에 해당]

① 저장한 과실에서 나타나는 손해[사과, 배, 단감, 떫은감에 해당]

ⓜ 저장성 약화, 과실경도 약화 등 육안으로 판별되지 않는 손해[사과, 배, 단감, 떫은감에 해당]

ⓝ 농업인의 부적절한 잎소지(잎 제거)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단감, 떫은감에 해당]

ⓞ 병으로 인해 낙엽이 발생하여 태양광에 과실이 노출됨으로써 발생한 손해[단감, 떫은감에 해당]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P93 4) 보험기간 과수4종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 품목 신설

구분		보험의 목적	보험기간	
약관	보장		보장개시	보장종료
보통약관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	사과, 배, 단감, 떫은감(이듬해에 맺은 과실)	계약체결일 24시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이듬해 11월 20일을 초과할 수 없음
특별약관	종합위험 나무손해보장	사과, 배, 단감, 떫은감	이듬해 2월 1일	이듬해의 다음해 1월 31일

P97

① 보험료의 구성

㉠ 정부보조보험료는 순보험료의 50%와 부가보험료의 100%를 지원한다.(단, 감귤(만감류), 복숭아, 포도의 경우 순보험료의 47~60%, 사과, 배, 단감, 떫은감의 경우 순보험료의 33~65%를 차등 지원한다)

② 보험료의 산출

㉠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방식(복숭아, 자두, 매실, 살구, 오미자, 밤, 호두, 유자, 감귤(만감류), 사과, 배, 단감, 떫은감 13개 품목)

ⓑ 나무손해보장 특별약관 적용보험료(복숭아, 자두, 매실, 살구, 유자, 감귤(만감류), 사과, 배, 단감, 떫은감)

P100 7) 보험금

①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 방식(복숭아, 자두, 매실, 살구, 오미자, 밤, 호두, 유자, 감귤(만감류), 사과, 배, 단감, 떫은감 등 과수 13개) 품목의 보장별 보험금 지급 사유 및 보험금 계산은 아래와 같다.

보장	보험의 목적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금 계산(지급금액)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 (보통약관)	복숭아	보장하는 재해로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x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 감수량) + 병충해감수량} ÷ 평년수확량 ※ 병충해감수량 = 병충해 입은 과실의 무게 X 0.5
	자두, 매실, 살구, 오미자, 밤, 호두, 유자, 감귤(만감류) 사과, 배, 단감, 떫은감		보험가입금액 x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이하 동일			

주4) 미보상감수량이란 보장하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감소되었다고 평가되는 부분을 말하며, 계약 당시 이미 발생한 피해, 병해충(단, 복숭아의 경우 세균구멍병, 사과의 경우 자연재해성 탄저병 제외)으로 인한 피해 및 제초상태 불량 등으로 인한 수확감소량으로써 피해율 산정 시 감수량에서 제외된다.

P105 * 감귤(온주밀감류) 수확기 잔존비율 개정

사고발생 월	잔존비율(%)
12월	(100 – 39) - (0.935 x 사고 발생일자)
1월	(100 – 68) - (0.774 x 사고 발생일자)

2월	(100 – 92) - (0.286 x 사고 발생일자)

P106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인정계수>

구분	80%형 피해과실	100%형 피해과실
피해인정계수	0.8	1

P106 * 블루베리

주1) 피해율산출을 위한 지표는 아래와 같다.

- 과실손해피해율 = (∑재배종별 · 수령별 고사주수 ÷ 실제결과주수 x 재배종별 잔여수확량비율) + {(재배종별 · 수령별 조사대상주수 ÷ 실제결과주수) x (∑재배종별 · 수령별 표본가지 피해과실 수 x 재배종별 잔여수확량비율) ÷ ∑재배종별 · 수령별 표본가지 전체 과실 수}

이하 내용 동일

P107 9) 특별약관

① 종합위험 나무손해보장 특별약관(복숭아, 자두, 매실, 살구, 유자, 포도, 참다래, 무화과, 감귤(만감류, 온주밀감류), 사과, 배, 단감, 떫은감

P109 ⓐ 과거수확량 자료가 없는 경우(신규 가입)

※ 살구의 경우 표준수확량의 70%를 평년수확량으로 결정

ⓑ 과거수확량 자료가 있는 경우(최근 5년 이내 가입 이력 존재)

□ 평년수확량 = 〔 A + (B - A) × (1 - Y / 5) 〕 × C / B
- ㅇ A(과거평균수확량) = ∑과거 5년간 수확량 ÷ Y
- ㅇ B(평균표준수확량) = ∑과거 5년간 표준수확량 ÷ Y
- ㅇ C(당해연도(가입연도) 표준수확량)
- ㅇ Y = 과거수확량 산출연도 횟수(가입횟수)

※ 이때, 평년수확량은 보험가입연도 표준수확량의 130%를 초과할 수 없다.
(복숭아, 포도 제외)

※ 유자의 경우 최근 7년 중 4년 이상 가입이력이 있는 과수원은 위에서 산출된 평년수확량과 최근 7년간 가입이력 중 최대·최소 과거수확량 1개씩을 제외하고 계산한 과거수확량 평균 중 더 큰 값을 적용한다. 단, 산출된 값은 보험가입연도 표준수확량의 130%를 초과할 수 없다.

※ 복분자, 오디의 경우 (A × Y / 5) + 〔 B × (1 - Y / 5) 〕로 산출한다.

* 복분자: A(과거결과모지수 평균) = ∑과거 5개년 포기당 평균결과모지수 ÷ Y,
B(표준결과모지수) = 포기당 5개(2~4년) 또는 4개(5~11년)

이때, 평년결과모지수는 보험가입연도 표준결과모지수의 130% 한도로 산출한다.
* 오디: A(과거평균결실수) = ∑과거 5개년 결실수 ÷ Y,
B(품종별 표준결실수)
이때, 평년결실수는 보험가입연도 표준결실수의 130%를 한도로 산출한다.
※ 사과, 배, 단감, 떫은감의 경우, 적과전 종합위험방식 평년착과량 산정 방식을 준용하며, 수확전 착 과수 조사값을 적과후착과수로 계산한다.

□ 과거수확량 산출방법
ㅇ 수확량조사 시행한 경우: 조사수확량>평년수확량의 50% → 조사수확량,
평년수확량의 50%≥조사수확량 → 평년수확량의 50%
※ 감귤(온주밀감류), 블루베리의 경우 평년수확량≥평년수확량×(1-피해율)≥평년수확량의 50%
→ 평년수확량×(1-피해율), 평년수확량의 50%>평년수확량×(1-피해율) → 평년수확량 50%
* 피해율(온주밀감류) = MIN[보통약관 피해율+(동상해 피해율 x 수확기잔존비율), 100%]
* 피해율(블루베리) = MIN(보통약관 피해율, 100%)
※ 복분자의 경우 실제결과모지수>평년결과모지수의 50% → 실제결과모지수,
평년결과모지수의 50%≥ 실제결과모지수 → 평년결과모지수의 50%
※ 오디의 경우 조사결실수>평년결실수의 50% → 조사결실수, 평년결실수의 50%≥ 조사결실수 → 평년결실수의 50%
ㅇ 무사고로 수확량조사 시행하지 않은 경우: 표준수확량의 1.1배와 평년수확량의 1.1배 중 큰 값을 적용한다.
※ 복숭아, 포도, 감귤(만감류)의 경우 수확전 착과수 조사를 한 값을 적용한다.
(수확량=착과수조사값 x 평균과중)
※ 복분자의 경우 MAX(평년결과모지수, 표준결과모지수) x 1.1
※ 오디의 경우 MAX(평년결실수, 표준결실수) x 1.1

P112 ㉠ 보험료의 구성

ⓐ 정부보조보험료는 순보험료의 50%와 부가보험료의 100%를 지원한다. (단, 벼는 보장수준에 따라 순보험료의 33% ~ 65%, 보리는 순보험료의 47% ~ 60%를 차등 지원한다.)

P115 <조사료용 벼의 경작불능보험금 보장비율>

주2) 42%형 가입가능 자격: 2년 연속 가입 및 2년간 수령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20% 미만

※ 단, 간척 농지의 경우, 가입비율 45%형, 42%형은 가입이 제한됨 (40%형, 35%형, 30%형 중 선택 가인 가능)

주3) 40%형, 35%형, 30%형: 제한없음

⑦ 자기부담비율

ⓑ 자기부담비율 선택 기준

㉰ 20%형, 30%형, 40%형: 제한 없음

※ 단, 벼 품목의 간척 농지의 경우, 자기부담비율 10%형, 15%형은 가입이 제한됨 (20%형, 30%형, 40%형 중 선택 가입)

P118 <벼 과거수확량 자료가 있는 경우 산출방식>

□ 벼 품목 평년수확량 = 〔 A + (B × D - A) × (1 - Y / 5) 〕 × C / D
 ㅇ A(과거평균수확량) = ∑과거 5년간 수확량 ÷ Y
 ㅇ B = 가입연도 지역별 기준수확량
 ㅇ C(가입연도 보정계수) = 가입년도의 품종별, 이앙일자별, 친환경재배 보정계수를 곱한 값
 ㅇ D(과거평균보정계수) = ∑과거 5년간 보정계수 ÷ Y
 ㅇ Y = 과거수확량 산출연도 횟수(가입횟수)
 ※ 이때, 평년수확량은 보험가입연도 표준수확량의 130%를 초과할 수 없다.
 ※ 조사료용 벼 제외

□ 보리·밀·귀리 품목 평년수확량 = 〔 A + (B - A) × (1 - Y / 5) 〕 × C / B
 ㅇ A(과거평균수확량) = ∑과거 5년간 수확량 ÷ Y
 ㅇ B(평균표준수확량) = ∑과거 5년간 표준수확량 ÷ Y
 ㅇ C(표준수확량) = 가입연도 표준수확량
 ㅇ Y = 과거수확량 산출연도 횟수(가입횟수)
 ※ 이때, 평년수확량은 보험가입연도 표준수확량의 130%를 초과할 수 없다.

□ 과거수확량 산출방법
 ㅇ 수확량조사 시행한 경우: 조사수확량>평년수확량의 50% → 조사수확량, 평년수확량의 50%≥ 조사수확량 → 평년수확량의 50%
 ㅇ 무사고로 수확량조사 시행하지 않은 경우: 표준수확량의 1.1배와 평년수확량의 1.1배 중 큰 값을 적용한다.

P119

㉵ 가입수확량

보험에 가입한 수확량으로 범위는 평년수확량의 50%~100% 사이에서 계약자가 결정한다. 벼와 밀은 5% 단위로 리(동)별로 선정 가능하다.

3. 밭작물

가. 대상품목

고구마, 옥수수(사료용 옥수수), 콩, 양배추(가을, 월동), 양파, 마늘, 차(茶), 감자(봄, 고랭지, 가을), 팥, 수박(노지), 단호박, 참깨, 당근, 녹두, 생강, 배추(고랭지, 월동, 가을, 봄), 고추, 브로콜리, 메밀, 무(고랭지, 월동, 가을), 파(대파, 쪽파, 실파), 시금치(노지), 양상추, 인삼 등 24개 품목

1) 밭작물의 보장방식은 크게

①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방식 (고구마, 옥수수(사료용 옥수수), 콩, 양배추(가을, 월동), 양파, 마늘, 차(茶), 감자(봄, 고랭지, 가을), 팥, 수박(노지), 단호박, 참깨, 당근, 녹두, 생강, 가을무(일반무), 가을배추(병충해 보장형) 등 17개 품목)

② 종합위험 생산비보장방식 (고추, 브로콜리, 메밀, 무(고랭지, 월동, 가을(단무지무, 알타리무)), 배추(고랭지, 월동, 봄), 파(대파, 쪽파, 실파), 시금치(노지), 양상추 등 8개 품목)

※ 수확감소보장으로 이동 → 단호박, 가을무(일반무), 당근, 가을배추(일반, 병충해보장형)

P120 보장하는 재해

구분	품목	보장하는 재해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방식	양파, 마늘, 고구마, 옥수수(사료용 옥수수), 차(茶), 콩, 양배추, 팥, 수박, 단호박, 참깨, 당근, 생강, 녹두, 가을무(일반무), 가을배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감자(고랭지, 봄, 가을) 가을배추(병충해보장형)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병충해

㉣ 병충해

※ 가을배추(병충해보장형)의 경우,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지행지침에 따라 인정된 자연재해성 무름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P121 ㉡ 종합위험 생산비보장방식

ⓐ 보장하는 재해

구분	품목	보장하는 재해
종합위험 생산비보장방식	배추(가을배추제외), 무(가을무(일반무)제외), 파, 메밀, 브로콜리, 시금치(노지), 양상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고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병충해

ⓑ 보장하지 않는 손해

㉮ 보장하지 않는 재해로 발생한 생리장해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P125 ㉠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 품목 추가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고구마, 옥수수(사료용 옥수수), 콩, 양배추(가을양배추, 월동양배추), 양파, 마늘, (茶), 감자(봄재배, 고랭지재배, 가을재배), 팥, 수박(노지), 단호박, 참깨, 당근, 녹두, 생강, 가을무(일반무, 가을무(단무지무, 알타리무)), 가을배추, 가을배추(병충해보장형) 등 17개 품목)

구분		보험의 목적	보험기간	
약관	보장		보장개시	보장종료
보통 약관	종합위험 재파종보장	마늘(난지형)	계약체결일 24시 다만, 조기파종 보장 특약 가입 시 해당 특약 보장종료 시점	판매개시연도 10월 31일
		고랭지당근	파종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파종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이며 파종완료일은 판매 개시연도 5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재파종 완료일 다만, 판매 개시연도 5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가을무(일반)	파종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파종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이며 파종완료일은 판매 개시연도 9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재파종 완료일 다만, 판매 개시연도 9월 25일을 초과할 수 없음
		가을, 월동 당근	파종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파종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이며 파종완료일은 판매 개시연도 8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재파종 완료일 다만, 판매 개시연도 8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감자(가을)	파종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파종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재파종 완료일 다만, 판매 개시연도 9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종합위험 재정식 보장	양배추(가을, 월동)	정식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정식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이며 정식 완료일은 판매 개시연도 9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재정식 완료일 다만, 판매 개시연도 10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단호박	정식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정식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이며 정식 완료일은 판매 개시연도 9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재정식 완료일 다만, 판매 개시연도 5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가을배추(일반, 병충해)	정식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정식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이며 정식 완료일은 판매 개시연도 9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재정식 완료일 다만, 판매 개시연도 9월 2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양파	계약체결일 24시	재정식 완료일 다만, 판매 개시연도 11월 21일을 초과할 수 없음
	종합위험	콩, 팥	계약체결일 24시	수확 개시 시점

	경작불능보장	옥수수, 사료용 옥수수, 고구마, 감자(고랭지재배), 양파		단, 사료용 옥수수는 판매개시연도 8월 31일 초과 X
		마늘	계약체결일 24시. 다만, 조기파종 보장 특약 가입 시 해당 특약 보장종료 시점	
		감자(봄, 가을)	파종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파종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양배추	정식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정식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이며 정식 완료일은 판매개시연도 9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수박	정식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정식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이며 정식 완료일은 판매개시연도 5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단호박	정식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정식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이며 정식 완료일은 판매개시연도 5월 29일을 초과할 수 없음	
		가을 (일반, 병충해)	정식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정식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이며 정식 완료일은 판매개시연도 9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참깨	파종(정식)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파종(정식)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이며 파종(정식)완료일은 판매개시연도 6월 20일을 초과할 수 없음	
		고랭지당근	파종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 시 파종완료일이 경과한 경우 계약체결일 24시이	

			며 파종완료일은 판매개시연도 5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가을 월동당근	파종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파종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이며 파종 완료일은 판매개시연도 8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가을무(일반무)	파종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파종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이며 파종 완료일은 판매개시연도 9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생강 녹두	계약체결일 24시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	콩, 옥수수, 고구마, 감자(고랭지), 양파, 팥	계약체결일 24시	수확기 종료 시점. 단, 아래 날짜를 초과할 수 없음 - 감자(고랭지재배) : 판매개시연도 10월 31일 - 고구마 : 판매개시연도 10월 31일 - 옥수수 : 판매개시연도 9월 30일 - 콩 : 판매개시연도 11월 30일 - 팥 : 판매개시연도 11월 13일 - 마늘 : 이듬해 6월 30일 - 양파 : 이듬해 6월 30일
		마늘	계약체결일 24시 다만, 조기파종보장 특약 가입 시 해당 특약 보장종료 시점	
		감자(가을)	파종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파종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제주는 판매개시연도 12월 31일, 제주 이외는 판매개시연도 11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감자(봄)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판매개시연도 7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가을양배추	정식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정식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이며 정식 완료일은 판매개시연도 9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판매개시연도 11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월동양배추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아래의 날짜를 초과할 수 없음 - 극조생, 조생 : 이듬해 2월 28일 - 중생 : 이듬해 3월 15일 - 만생 : 이듬해 3월 31일

		차(茶)	계약체결일 24시	햇차 수확종료시점 다만, 전북은 이듬해 5월 20일, 전북 이외는 이듬해 5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수박	정식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정식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이며 정식 완료일은 판매 개시연도 5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수확 개시 시점 다만, 판매개시연도 8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음
		단호박	정식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정식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이며 정식 완료일은 판매개시연도 5월 29일을 초과할 수 없음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판매개시연도 8월 27일을 초과할 수 없음
		가을배추(일반, 병충해)	정식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정식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단, 정식 완료일은 판매개시연도 9월 10일를 초과할 수 없음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판매개시연도 12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참깨	파종(정식)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파종(정식)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이며 파종(정식)완료일은 판매개시연도 6월 2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판매개시연도 10월 20일을 초과할 수 없음
		고랭지당근	파종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 시 파종완료일이 경과한 경우 계약체결일 24시이며 파종완료일은 판매개시연도 5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판매개시연도 10월 20일을 초과할 수 없음
보통약관		가을, 월동당근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이듬해 2월 말일을 초과할 수 없음
		가을무(일반)	파종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 시 파종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이며 파종완료일은 판매개시연도 9월 15일을 초과 할 수 없음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판매개시연도 12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생강	계약체결일 24시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판매개시연도 11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음
		녹두	계약체결일 24시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판매개시연도 11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특별	종합위험	마늘	계약체결일 24시	한지형마늘 보험상품 최초 판매

약관	조기파종보장	(남도종)		개시일 24시

P127 ㉡ 종합위험 생산비보장

(고추, 브로콜리, 메밀, 무(고랭지무, 월동무), 배추(고랭지배추, 월동배추, 봄배추), 파(대파, 쪽파, 실파), 시금치(노지), 양상추 등 8개 품목)

보장	보험의 목적	보험기간	
		보장개시	보장종료
종합위험 생산비보장	고추	계약체결일 24시	정식일부터 150일째 되는 날 24시
	고랭지무	파종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 시 파종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단, 파종완료일은 아래의 일자를 초과할 수 없음 - 고랭지무 : 판매개시연도 7월 31일 - 월동무: 판매개시연도 10월 15일 - 가을무: 판매개시연도 9월 15일 - 쪽파(실파)[1·2형]:판매개시연도 10월 15일 - 시금치(노지):판매개시연도 10월 31일 - 메밀 : 판매개시연도 9월 15일	파종일부터 80일째 되는 날 24시
	월동무		최초 수확 직전 다만, 이듬해 3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가을무(단무지무, 알타리무)		파종완료일부터 80일째 되는 날 24시
	쪽파(실파) [1형]		최초 수확 직전 다만, 판매개시 연도 12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쪽파(실파) [2형]		최초 수확 직전 다만, 이듬해 5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시금치(노지)		최초 수확 직전 다만, 이듬해 1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메밀		최초 수확 직전 다만, 판매개시연도 11월 20일을 초과할 수 없음
	고랭지배추	정식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 시 정식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단, 정식완료일은 아래의 일자를 초과할 수 없음 - 고랭지배추 : 판매개시연도 7월 31일 - 월동배추 : 판매개시연도 9월 25일 - 봄배추: 판매개시연도 4월 20일	정식일부터 70일째 되는 날 24시
	월동배추		최초 수확 직전 다만, 이듬해 3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봄배추		정식완료일부터 70일째 되는 날 24시
	대파		정식일부터 200일째 되는 날 24시
	브로콜리		정식일로부터 160일이 되는 날 24시
	양상추		정식일부터 70일째 되는

		- 대파 : 판매개시연도 6월 15일 - 브로콜리 : 판매개시연도 9월 30일 - 양상추 : 판매개시연도 8월 31일	날 24시 다만, 판매개시연도 11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종합위험 경작불능보장	고랭지무 월동무 가을무 쪽파(실파) [1형, 2형] 시금치(노지) 메밀	파종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파종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단, 파종완료일은 아래의 일자를 초과할 수 없음 - 고랭지무 : 판매개시연도 7월 31일 - 월동무 : 판매개시연도 10월 15일 - 가을무: 판매개시연도 9월 15일 - 쪽파(실파)[1·2형]:판매개시연도 10월 15일 - 시금치(노지) : 판매개시연도 10월 31일 - 메밀 : 판매개시연도 9월 15일	최초 수확 직전 다만, 종합위험생산비 보장에서 정하는 보장종료일을 초과할 수 없음
	고랭지배추 월동배추 봄배추 대파 양상추	정식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정식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단, 정식완료일은 아래의 일자를 초과할 수 없음 - 고랭지배추 : 판매개시연도 7월 31일 - 월동배추 : 판매개시연도 9월 25일 - 봄배추: 판매개시연도 4월 20일 - 대파 : 판매개시연도 6월 15일 - 양상추 : 판매개시연도 8월 31일	
종합위험 재파종보장	메밀 시금치 고랭지무 월동무 가을무 쪽파(실파) [1, 2형]	파종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 시 파종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단, 파종완료일은 아래의 일자를 초과할 수 없음	재파종완료일 다만, 아래의 일자를 초과할 수 없음 - 메밀 : 판매개시연도 9월 25일 - 시금치(노지) : 판매개

		- 메밀 : 판매개시연도 9월 15일 - 시금치(노지) : 판매개시연도 10월 31일 - 고랭지무: 판매개시연도 7월31일 - 월동무 : 판매개시연도 10월15일 - 가을무: 판매개시연도 9월 15일 - 쪽파(실파)[1·2형] : 판매개시연도 10월 15일	시연도 11월 10일 - 고랭지무: 판매개시연도 8월 10일 - 월동무 : 판매개시연도 10월 25일 - 가을무: 판매개시연도 9월 25일 - 쪽파(실파)[1·2형] : 판매개시연도 10월 25일
종합위험 재정식보장	월동배추 고랭지배추 봄배추 브로콜리 양상추 대파	정식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 시 정식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단, 정식완료일은 아래의 일자를 초과할 수 없음 - 월동배추 : 판매개시연도 9월 25일 - 고랭지배추: 판매개시연도 7월 31일 - 봄배추 : 판매개시연도 4월 20일 - 브로콜리 : 판매개시연도 9월 30일 - 양상추 : 판매개시연도 8월 31일 - 대파 : 판매개시연도 6월 15일	재정식완료일 다만, 아래의 일자를 초과할 수 없음 - 월동배추 : 판매개시연도 10월 5일 - 고랭지배추: 판매개시연도 8월10일 - 봄배추: 판매개시연도 5월 15일 - 브로콜리 : 판매개시연도 10월 10일 - 양상추 : 판매개시연도 9월 10일 - 대파: 판매개시연도 6월 21일
	고추	계약체결일 24시	재정식 완료일. 다만, 판매개시연도 6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음

P129 ㉥ 작물특정 및 시설종합위험 인삼손해보장방식(인삼)

보험기간 조정(1형과 2형을 구분하지 않고 통일)

구분	보장개시	보장종료
인삼 해가림시설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 납입할 때 다만, 5월 1일 이전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판매개시연도 5월 1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종료일 24시 다만, 6년근은 판매개시연도 10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P130 <연근별 (보상)가액>

구분	2년근	3년근	4년근	5년근	6년근
인삼	9,700원	11,000원	12,700원	14,200원	16,700원

※ 인삼 가입시기 통합운영에 따라 계약체결 시점 기준 (만나이+1년)으로 적용하여 가입 및 보상예) 23. 4. 15. 식재, 25년 5. 15. 가입 → 직파: 3년근, 이식: 4년근으로 가입

P132 보험료

㉠ 보험료의 구성

ⓐ 정부보조보험료는 [순보험료의 50%범위 또는 자기부담비율에 따른 차등지원]과 부가보험료 100%를 지원한다.

자기부담비율에 따른 차등지원 품목 (콩, 양파, 감자, 고구마, 옥수수, 마늘, 양배추, 배추, 무)

구분	자기부담비율				
	10	15	20	30	40
국고 보조율(%)	47	48	50	55	60

㉡ 보험료의 산출

ⓐ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고구마, 옥수수(사료용 옥수수), 콩, 양배추(가을양배추, 월동양배추), 양파, 마늘, 차(茶), 감자(봄, 고랭지, 가을), 팥, 수박(노지), 단호박, 참깨, 당근, 녹두, 생강, 가을무(일반무), 가을배추, 가을배추(병충해 보장형) 등 17개 품목)

※ 감자(고랭지), 고구마, 팥, 차(茶) 품목의 경우 방재시설할인율 미적용

ⓑ 종합위험 생산비보장(고추, 브로콜리, 메밀, 무(고랭지, 월동, 가을(단무지무, 알타리무)), 배추(고랭지, 월동, 봄), 파(대파, 쪽파, 실파), 시금치(노지), 양상추 등 8개 품목)

ⓒ 작물특정 및 시설종합위험 인삼손해보장방식(인삼)

※ 인삼재배농지에 관수시설이 있는 경우 방재시설 할인(5%) 적용

㉢ 해가림시설 종합위험보장 보통약관 적용보험료

보통약관 보험가입금액 x 지역별 보통약관 영업요율 x (1 – 인삼 6년근 해가림시설 할인율) x 종별 요율상대도

※ 인삼 6년근 재배 해가림시설에 한하여 10% 할인율 적용

P134 ⑥ 보험금

㉠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고구마, 옥수수(사료용 옥수수), 콩, 양배추(가을, 월동), 양파, 마늘, 차(茶), 감자(봄, 고랭지, 가을), 팥, 수박(노지), 단호박, 참깨, 당근, 녹두, 생강, 가을무(일반무), 가을배추, 가을배추(병충해보장형)) 등 17개 품목

ⓐ 마늘, 양파 등 17개 품목의 수확감소 및 경작불능보장의 보험금 지급사유 및 보험금 계산은 아래와 같다.

보장	보험의 목적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금 계산(지급금액)
종합위험 경작불능보장 (보통약관)	마늘, 양파, 감자(고랭지, 봄, 가을), 고구마, 옥수수, 양배추, 사료용 옥수수, 콩, 팥, 수박, 단호박, 가을배추, 참깨, 당근, 가을무(일반무), 생강, 녹두	보장하는 재해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x 일정비율 ※ 일정비율은 하기 주3), 주4)의 <자기부담비율에 따른 경작불능보험금> 참조 단, 사료용 옥수수의 경우 아래와 같다. 보험가입금액 x 보장비율 x 경과비율 ※ 하기 주4)의 보장비율 및 경과비율 표 참조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 (보통약관)	마늘, 양파, 고구마, 양배추, 콩, 팥, 차(茶), 수박, 단호박, 가을배추, 참깨, 당근, 가을무(일반무), 생강, 녹두	보장하는 재해로 피해율이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x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 수량) ÷ 평년수확량
	감자 (고랭지, 봄, 가을)	보장하는 재해로 피해율이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x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 수량) + 병충해감수량} ÷ 평년수확량
	옥수수 (사료용 옥수수 제외)	보장하는 재해로 손해액이 자기부담 금을 초과하는 경우	MIN [보험가입금액, 손해액] – 자기부담금 ※ 손해액 = 피해수확량 x 가입가격 ※ 자기부담금 = 보험가입금액 x 자기부담비율

주3) 경작불능보험금 지급비율 (고구마, 옥수수, 감자(봄), 감자(고랭지), 감자(가을), 마늘, 콩, 양파, 팥, 양배추(가을·월동), 단호박, 당근(가을·월동)

주4) 경작불능보험금 지급비율 (수박, 참깨, 고랭지당근, 생강, 녹두, 가을무(일반무), 가을배추, 가을배추(병충해보장형)

P136 <손해정도에 따른 손해정도비율>

손해정도	1~10%	11~20%	21~30%	31~40%	41~50%
손해정도비율	10%	20%	30%	40%	50%
손해정도	51~60%	61~70%	71~80%	81~90%	91~100%
손해정도비율	60%	70%	80%	90%	100%

(브로콜리: 정상, 50%, 80%, 100% 변동 없음)

ⓑ 종합위험 재파종·조기파종·재정식 보장

보장	보험의 목적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금 계산(지급금액)
종합위험 재파종 보장 (보통약관)	마늘(난지형)	보장하는 재해로 10a당 식물체의 주수가 30,000주보다 적어지고, 10a당 30,000주 이상으로 재파종한 경우 (단, 1회 지급)	보험가입금액 x 35% x 표준 피해율 ※ 표준 피해율(10a 기준) = (30,000 – 식물체 주수) ÷ 30,000
	무(월동, 고랭지, 가을), 쪽파(실파 1형, 2형), 시금치(노지), 메밀, 감자(가을재배), 당근	보장하는 재해로 면적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고 재파종한 경우(단, 1회 지급)	보험가입금액 x 20% x 면적피해율 ※ 면적피해율 = 피해면적 ÷ 보험가입면적 ※ 당근 : 보험가입금액 x 15% x 면적피해율
조기파종보장 (특별약관)	제주도 지역 농지에서 재배하는 남도종 마늘	[재파종보험금] 한지형 마늘 최초 판매개시일 24시 이전에 보장하는 재해로 10a당 식물체 주수가 30,000주 보다 적어지고, 10월 31일 이전 10a당 30,000주 이 상으로 재파종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x 25% x 표준 피해율 ※ 표준 피해율(10a 기준) = (30,000 – 식물체 주수) ÷ 30,000
		[경작불능보험금] 한지형 마늘 최초 판매개시일 24시 이전에 보장하는 재해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x 일정비율 ※ 일정비율은 하기 표 참조
		[수확감소보험금] 보장하는 재해로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x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 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종합위험 재정식 보장 (보통약관)	양배추, 배추(가을, 월동, 봄, 고랭지), 브로콜리, 양상추, 대파, 단호박, 고추, 양파	보장하는 재해로 면적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고 재정식한 경우 (단, 1회 지급)	보험가입금액 x 20% x 면적피해율 ※ 면적피해율 = 피해면적 ÷ 보험가입면 적

㉢ 종합위험 생산비보장 · 경작불능보장(메밀, 무(고랭지, 월동, 가을(단무지무, 알타리무)), 배추(고랭지, 월동, 봄), 파(대파, 쪽파, 실파), 시금치(노지), 양상추 등) 6개 품목의 보험금 지급사유 및 보험금 계산은 아래와 같다.

보장	보험의 목적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금 계산(지급금액)
경작불능보장 (보통약관)	메밀, 무(고랭지, 월동), 가을무(단무지무, 알타리무), 배추(고랭지, 월동, 봄), 파(대	보장하는 재해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한 경우 (해당 농지의 계약 소멸)	보험가입금액 x 일정비율

생산비 보장 (보통약관)	파, 쪽파, 실파), 양상추	보장하는 재해로 약관에 따라 계산한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x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자기부담비율 10%, 15%형은 메밀, 배추(고랭지, 월동), 무(고랭지, 월동), 파(대파), 시금치만 적용한다.

주3) 경작불능보험금은 보험목적물이 산지폐기 된 것을 확인 후 지급되며, 지급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농지에 대한 보험계약은 소멸하며 생산비보장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P138~139

① 준비기생산비계수 조정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고추	49.5%	54.2%
브로콜리	55.9%	67.1%

② 표준생장일수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고추	100일	홍고추는 100일, 풋고추는 70일

③ 표준수확일수(고추)

표준수확일수는 수확개시일로부터 수확종료일까지의 일수로 한다. 단, 수확종료일은 정식완료일로부터 15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P140 ⑦ 자기부담비율

㉡ 수확감소보장방식 – 고구마, 옥수수(사료용 옥수수), 콩, 양배추(가을, 월동), 양파, 마늘, 차(茶), 감자(봄, 고랭지, 가을), 팥, 수박(노지), 단호박, 참깨, 당근, 녹두, 생강, 가을무(일반무), 가을배추, 가을배추(병충해 보장형) 등

ⓐ 단, 수박 · 참깨, 생강, 녹두, 가을무(일반무), 가을배추, 가을배추(병충해보장형), 고랭지당근의 자기부담비율은 20%, 30%, 40%로 한다.

㉢ 생산비보장방식 – 메밀, 무(고랭지무, 월동무), 배추(고랭지배추, 월동배추, 봄배추), 파(대파, 쪽파, 실파), 시금치(노지), 양상추

ⓐ 단, 10%, 15%형은 메밀, 배추(고랭지, 월동), 무(고랭지, 월동), 파(대파), 시금치만 적용한다.

P144 2. 시설작물 및 버섯작물 (보장하는 재해 추가)

(1) ~ (4) 동일

(5)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인정된 일조량 부족 재해 시 시·군 등에서 해당 재해로 인해 작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보험기간 신설)

3. 버섯 작물

구조체, 피복재 등 농업용 시설물(버섯재배사)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위 자연재해나 조수해로 시설재배 버섯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

P145 ㉣ 보험의 목적인 부대시설 가입대상 추가

ⓐⓑⓒ 동일

ⓓ 농업용 시설물 내부에 고정, 연결 부착되고 동력을 공급받아 시설재배 농작물 대상으로 활용하는 선별기(단, 휴대용 선별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P147 보험기간 ① 종합위험 원예시설 손해보장

<table>
<tr><th colspan="3" rowspan="2">구분</th><th colspan="2" rowspan="2">보험의 목적</th><th colspan="2">보험기간</th></tr>
<tr><th>보장개시</th><th>보장종료</th></tr>
<tr><td colspan="3">농업용 시설물</td><td colspan="2">단동하우스(광폭형하우스를 포함), 연동하우스 및 유리(경질판)온실의 구조체 및 피복재</td><td rowspan="4">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td><td rowspan="4">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종료일 24시</td></tr>
<tr><td colspan="3">부대시설</td><td colspan="2">모든 부대시설(단, 동산시설 제외)</td></tr>
<tr><td rowspan="2">일조량 부족 外</td><td rowspan="2">시설재배 농작물</td><td>화훼류</td><td>국화, 장미, 백합, 카네이션</td></tr>
<tr><td>비화훼류</td><td>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고추, 호박, 수박, 멜론, 파프리카, 상추, 부추, 시금치, 가지, 배추, 파(대파, 쪽파), 무, 미나리, 쑥갓, 감자</td></tr>
<tr><td>일조량 부족 재해</td><td>시설재배 농작물</td><td colspan="2">상동</td><td colspan="2">보험가입일이 속하는 연도 12월부터 이듬해 3월 까지
다만, 보험가입일이 1월부터 3월 사이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음(일조시수 측정기간이 15일 이하인 경우 미보장)
ⅰ)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 납입할 때부터 3월 31일까지
ⅱ) 보험가입일이 속하는 연도 12월부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종료일 24시까지</td></tr>
</table>

P148 보험가입금액

① 원예시설

㉠ 농업용 시설물(단동, 연동, 유리온실 및 내재해형하우스, 비규격하우스)

② 버섯

㉠ 버섯재배사(단동, 연동, 경량철골조등 버섯재배사)

P152 ③ 보험료의 환급

㉤ 보험사가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 상기 (4)의 환급금 청구일은 보험사의 해지 의사표시(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력 의사표시 포함)가 보험계약자 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도달한 날로 봅니다.

P153 주1) 준비기생산비계수

주1) ~ 다만, 국화, 백합 및 카네이션 재절화재배는 20%

주4) 수확일수는 수확개시일로부터 사고발생일까지 경과일수로 하며, 표준수확일수(수확개시일로부터 수확종료일까지 표준적인 생장일수)는 아래 <표준생장일수 및 표준수확일수> 표를 따른다. 단, 오이, 토마토, 고추, 호박, 상추의 표준수확일수는 수확개시일부터 수확종료일까지의 일수로 하며 국화·수박(일반 대형과)·멜론의 경과비율은 1로 한다.

P156 버섯 준비기생산비계수 개정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표고버섯(톱밥배지재배)	66.3%	81.4%
느타리버섯(균상재배)	67.6%	69.6%
양송이버섯(균상재배)	75.3%	70.3%

P159 농업수입안정보험

가. 대상품목: 포도, 감자(봄, 가을, 고랭지), 복숭아, 고구마, 콩, 마늘, 양파, 양배추(가을, 월동), 옥수수, 보리, 벼, 감귤(만감류), 배추(고랭지, 가을), 고랭지무, 가을무(일반무), 단감

나. 보장방식

② 농업수입감소보험금은 과거수입형과 기대수입형으로 구분된다.

과거수입형	보험가입금액 X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기대수입형	기준수입 X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다. 보험사업 실시지역 및 판매 기간

품목	판매지역	판매기간
콩	6~7월	전국
양파	10~11월	전국
마늘	10~11월	전국
단감	11~12월	창원·진주·김해(경남)
복숭아	11월	이천(경기), 원주(강원), 음성·충주(충북), 남원·임실(전북), 청도·의성(경북)
포도(비가림시설)	11월	전국
고구마	4월~6월	전국
감자(봄재배)	4~5월	서산·태안·부여·홍성(충남), 예천·상주·안동·영주(경북)
감자(고랭지재배)	5~6월	평창·정선·춘천(강원)
감자(가을재배)	8월~10월	전국
가을양배추	8월~9월	전국
월동양배추	8월~9월	전국
옥수수	4월~5월	전국
보리	10~12월	전국
벼	4~6월	전국
감귤(만감류)	4~5월	제주·서귀포(제주)
고랭지배추	6월~7월	강릉·태백·정선(강원)
고랭지무	6월~7월	강릉·태백·정선(강원)
가을배추	8~9월	괴산(충북), 해남(전남)
가을무(일반무)	8~9월	충주(충북), 당진(충남), 무안·나주(전남)

※벼: 정부 방침에 따라 일부 지역 대상으로 판매될 수 있음(2025년 전남(영광), 경북(상주), 충남(천안), 충북(청주)

라. 상품 내용

1) 보장하는 재해 및 가격하락

가입대상 품목	보장하는 재해 및 가격하락
포도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가격하락 (비가림시설 화재의 경우, 특약 가입시 보상)
고구마, 콩, 마늘, 양파, 가을양배추, 월동양배추, 옥수수, 보리, 벼, 감귤(만감류), 고랭지배추, 고랭지무, 가을무(일반무), 가을배추, 단감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가격하락
감자(봄재배), 감자(고랭지재배), 감자(가을재배), 복숭아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병충해, 가격하락

④ 병충해: 병 또는 해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감자(봄, 고랭지, 가을재배), 복숭아(세균구멍병)만 해당)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 포도 품목 외

⑪ 보장하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동녹(과실에 발생하는 검은 반점 병)등 간접손해

[단감에 해당]

⑫ 식물방역법 제36조(방제명령 등)에 의거 금지 병해충인 과수 화상병 발생에 의한 폐원으로 인한 손해 및 정부 및 공공기관의 매립으로 발생한 손해[단감에 해당]

⑬ 저장성 약화, 과실경도 약화 등 육안으로 판별되지 않는 손해[단감에 해당]

⑭ 저장성 약화 또는 저장, 건조 및 유통 과정 중에 나타나거나 확인된 손해

⑮ 농업인의 부적절한 잎소지(잎 제거)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단감에 해당]

⑯병으로 인해 낙엽이 발생하여 태양광에 과실이 노출됨으로써 발생한 손해 [단감에 해당]

⑰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4) 보험기간

구분		가입대상품목	대상재해	보장개시 · 보장종료(보험기간)	
계약	보장			보장개시	보장종료
보통약관	이앙·직파 불능 보장	벼(조곡)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계약체결일 24시	판매개시연도 7월 31일
	재이앙·재직파 보장	벼(조곡)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이앙(직파)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이앙(직파)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판매개시연도 7월 31일
	재파종 보장	마늘(난지형)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계약체결일 24시	판매개시연도 10월 31일
		고랭지무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파종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파종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이며 파종 완료일은 판매개시연도 7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재파종 완료일 다만, 판매개시연도 8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음
		가을무(일반무)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파종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파종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이며 파종 완료일은 판매개시연도 9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재파종 완료일 다만, 판매개시연도 9월 25일을 초과할 수 없음
		감자(가을재배)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병충해	파종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 시 파종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재파종 완료일 다만, 판매개시연도 9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재정식 보장	가을양배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정식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정식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이며 정식 완료일은 판매개시연도 9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재정식 종료 시점 다만, 판매개시연도 10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월동양배추			
		가을배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정식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정식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이며 정식완료일은 판매개시연도 9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재정식 완료일 다만, 판매개시연도 9월 20일을 초과할 수 없음
		고랭지배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정식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정식완료일이	재정식 완료일 다만, 판매개시연도 8월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단, 정식완료일은 판매개시연도 7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1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양파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계약체결일 24시	재정식 완료일 다만, 판매개시연도 11월 21일을 초과할 수 없음
경작불능 보장	콩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계약체결일 24시	수확 개시 시점
	감자 (봄재배)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병충해	파종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파종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감자 (고랭지재배)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병충해	계약체결일 24시	
	감자 (가을재배)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병충해	파종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파종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가을양배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정식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정식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이며 정식 완료일은 판매개시연도 9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월동양배추			
	고구마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계약체결일 24시	
	양파			
	마늘			
	옥수수			
	보리			
	벼(조곡)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이앙(직파)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이앙(직파)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출수기 전
	고랭지배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정식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정식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단, 정식완료일은 판매개시연도 7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수확 개시 시점
	고랭지무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파종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파종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수확 개시 시점

			단, 파종완료일은 판매개시연도 7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가을무 (일반무)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파종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파종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이며 파종 완료일은 판매개시연도 9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수확 개시 시점
	가을배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정식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정식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이며 정식완료일은 판매개시연도 9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수확 개시 시점
수확불능 보장	벼(조곡)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이앙(직파)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이앙(직파)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아래 날짜를 초과할 수 없음 벼 : 판매개시연도 11월 30일
농업수입 감소보장	콩, 고구마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계약체결일 24시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아래 날짜를 초과할 수 없음 콩 : 판매개시연도 11월 30일 양파, 마늘 : 이듬해 6월 30일 고구마 : 판매개시연도 10월 31일 옥수수 : 판매개시연도 9월 30일 감자(봄재배) : 판매개시연도 7월 31일 감자(고랭지재배) : 판매개시연도 10월 31일 벼 : 판매개시연도 11월 30일 감귤(만감류) : 이듬해 2월 말일
	양파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계약체결일 24시	
	마늘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계약체결일 24시	
	옥수수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계약체결일 24시	
	감자 (봄재배)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병충해	파종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파종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감자 (고랭지재배)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병충해	계약체결일 24시	
	벼(조곡)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이앙(직파)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이앙(직파)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감귤 (만감류)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계약체결일 24시	
감자 (가을재배)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병충해	파종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파종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제주는 판매개시연도 12월 31일, 제주 이외는 판매개시연도 11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가을양배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정식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정식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이며 정식 완료일은 판매개시연도 9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아래의 날짜를 초과할 수 없음 가을양배추 : 판매개시연도 11월 30일
월동양배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정식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정식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이며 정식 완료일은 판매개시연도 9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아래의 날짜를 초과할 수 없음 극조생, 조생: 이듬해 2월 28일 중생: 이듬해 3월 15일 만생: 이듬해 3월 31일
보리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계약체결일 24시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이듬해 6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고랭지배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정식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정식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단, 정식완료일은 판매개시연도 7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아래 날짜를 초과할 수 없음 고랭지배추 : 판매개시연도 10월 31일
고랭지무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파종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파종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단, 파종완료일은 판매개시연도 7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아래 날짜를 초과할 수 없음 고랭지무 : 판매개시연도 10월 31일
가을무 (일반무)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파종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파종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아래 날짜를

			24시이며 파종 완료일은 판매개시연도 9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초과할 수 없음 가을무(일반무) : 판매개시연도 12월 15일
	가을배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정식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정식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이며 정식완료일은 판매개시연도 9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아래 날짜를 초과할 수 없음 가을배추 : 판매개시연도 12월 15일
	단감 (이듬해에 맺은 과실)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계약체결일 24시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이듬해 11월 20일을 초과할 수 없음
	복숭아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병충해 (세균구멍병)	계약체결일 24시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이듬해 10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콩, 고구마	가격하락	계약체결일 24시	수확기가격 공시시점
	양파		계약체결일 24시	
	마늘		계약체결일 24시	
	옥수수		계약체결일 24시	
	감자 (봄재배)		파종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파종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감자 (고랭지재배)		계약체결일 24시	
	감자 (가을재배)		파종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파종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가을양배추		정식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정식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이며 정식 완료일은 판매개시연도 9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월동양배추			
	보리		계약체결일 24시	
	벼(조곡)		이앙(직파)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이앙(직파)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감귤(만감류)		계약체결일 24시	
		고랭지배추	가격하락	정식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정식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단, 정식완료일은 판매개시연도 7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수확기가격 공시시점
		고랭지무	가격하락	파종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파종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단, 파종완료일은 판매개시연도 7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가을무 (일반무)	가격하락	파종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파종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이며 파종 완료일은 판매개시연도 9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가을배추	가격하락	정식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정식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이며 정식완료일은 판매개시연도 9월10일을 초과할 수 없음	
		단감 (이듬해에 맺은 과실)	가격하락	계약체결일 24시	수확기가격 공시시점
		복숭아	가격하락	계약체결일 24시	수확기가격 공시시점
특별 약관	나무손해 보장	단감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이듬해 2월 1일	이듬해의 다음해 1월 31일
		복숭아		판매개시연도 12월 1일 다만, 12월 1일 이후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에는 계약체결일 24시	이듬해 11월 30일
		감귤(만감류)		계약체결일 24시	이듬해 4월 30일
	수확량감 소보장	복숭아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병충해 (세균구멍병)	계약체결일 24시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이듬해 10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음

		감귤(만감류)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계약체결일 24시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아래 날짜를 초과할 수 없음 감귤(만감류) : 이듬해 2월 말일
병해충 보장 특별 약관	재이앙·재 직파 보장	벼(조곡)	병해충 (7종)	보통약관 재이앙·재직파보장 보험시기와 동일	보통약관 재이앙·재직파보장 보험종기와 동일
	경작불능 보장			보통약관 경작불능보장 보험시기와 동일	보통약관 경작불능보장 보험종기와 동일
	수확불능 보장			보통약관 수확불능보장 보험시기와 동일	보통약관 수확불능보장 보험종기와 동일
	농업수입 감소보장			보통약관 농업수입감소보장 보험시기와 동일	보통약관 농업수입감소보장 보험종기와 동일

구분		보험의 목적	대상재해	보장개시 · 보장종료(보험기간)	
계약	보장			보장개시	보장종료
보통 약관	농업수입 감소보장	포도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계약체결일 24시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이듬해 10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음
		포도	가격하락	계약체결일 24시	수확기가격 공시시점
		비가림 시설	자연재해 조수해	계약체결일 24시	이듬해 10월 10일
특별 약관	화재위험 보장	비가림 시설	화재	계약체결일 24시	이듬해 10월 10일
	나무손해 보장	포도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판매개시연도 12월 1일 다만, 12월 1일 이후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24시	이듬해 11월 30일
	수확량감소 추가보장	포도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계약체결일 24시	수확기 종료시점 다만, 이듬해 10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음

P164 6) 보험료

① 보험료의 구성

㉠ 정부보조보험료는 [순보험료의 48~65%범위에서 자기부담비율에 따른 차등지원]과 부가보험료의 100%를 지원한다.

ⓐ 자기부담비율에 따른 국고지원율(단감, 만감류, 복숭아, 포도, 가을양배추, 고구마, 봄감자, 가을감자, 월동양배추)

구분	자기부담비율		
	20	30	40

국고 보조율(%)	50	55	60

ⓑ 자기부담비율에 따른 국고지원율(벼, 보리, 가을무, 가을배추, 고랭지감자, 고랭지무, 고랭지배추, 마늘, 양파, 옥수수, 콩)

구분	자기부담비율			
	15	20	30	40
국고 보조율(%)	48	50	60	65

② 보험료의 산출

농업수입감소보장(포도, 감자(봄,가을재배,고랭지), 복숭아, 고구마, 콩, 마늘, 양파, 양배추(가을, 월동), 옥수수, 보리, 벼, 감귤(만감류), 배추(고랭지, 가을), 고랭지무, 가을무(일반무), 단감)

(1) 농업수입감소보장 보통약관 적용보험료

(가) 적용보험료(벼 제외)

보통약관 보험가입금액 × 지역별 보통약관 영업요율 × (1+손해율에 따른 할인·할증률) × (1-방재시설할인율)× (1-부보장 특별약관 할인율)(만감류)

※ 고구마, 보리, 가을무, 가을배추, 고랭지감자, 고랭지무 품목의 경우 방재시설할인율 미적용

※ 만감류의 경우 부보장 특별약관 할인율 적용

※ 봄감자는 방재시설할인율 5%

※ 손해율에 따른 할인·할증은 계약자를 기준으로 판단

※ 손해율에 따른 할인·할증폭은 –30%~+50%로 제한

※ 품목별 방재시설 할인율은 제3장 제1절 참조

(나) 적용보험료(벼)

보통약관 보험가입금액 × 지역별 보통약관 영업요율 × (1+손해율에 따른 할인·할증률) × (1+친환경재배시설할증률) × (1+직파재배농지 할증률)

※ 손해율에 따른 할인·할증은 계약자를 기준으로 판단

※ 손해율에 따른 할인·할증폭은 –30%~+50%로 제한

(2) 비가림시설 보통약관 적용보험료(포도만 해당)

가입금액 × 지역별 비가림시설보장 보험요율

7) 보험금

① 포도

보장	보험의 목적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금 계산(지급금액)	
농업수입 감소 보장 (보통약관)	포도	보장하는 재해로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과거수입형	보험가입금액x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피해율 = (기준수입 – 실제수입) ÷ 기준수입 ※ 기준수입 = 평년수확량 x 기준가격
			기대수입형	기준수입x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피해율 = (기준수입 – 실제수입) ÷ 기준수입
	비가림시설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로 인하여 비가림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Min(손해액 – 자기부담금, 보험가입금액) ※ 자기부담금 : 최소자기부담금(30만원)과 최대자기부담금 (100만원)을 한도로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비 가림시설)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피복재단독 사고 는 최소자기부담금(10만원)과 최대자기부담금(30만원)을 한도로 함(단, 화재손해는 자기부담금 적용하지 않음) ※ 자기부담금은 단지 단위, 1사고 단위로 적용함	
화재위험 보장 (특별약관)	비가림시설	화재로 인하여 비가림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나무손해 보장 (특별약관)	포도	보장하는 재해로 나무에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x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피해율 = 피해주수(고사된 나무) ÷ 실제결과주수 ※ 자기부담비율은 5%로 함	
수확량감소 추가보장 (특별약관)	포도	보장하는 재해로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x (피해율 x 10%) ※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 자기부담비율은 보험가입 시 선택한 비율로 함	

주2) 실제수입은 수확기에 조사한 수확량과 미보상감수량의 합에 수확기가격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다만, 수확기가격은 기준 가격의 1.5배를 한도로 한다(기대수입형).

P166 재파종 재정식 보험금

② 감자(봄, 고랭지, 가을), 복숭아, 고구마, 콩, 마늘, 양파, 양배추(가을, 월동), 옥수수, 보리, 벼, 감귤(만감류), 배추(고랭지, 가을), 고랭지무, 가을무(일반무), 단감

보장	보험의 목적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금 계산(지급금액)
재파종보장 (보통약관)	마늘	보장하는 재해로 10a당 식물체의 주수가 30,000주보다 적어지	보험가입금액 × 35% × 표준피해율 ※ 표준피해율(10a기준) = (30,000-식물체주수)÷ 30,000

		고, 10a당 30,000주 이상으로 재파종한 경우		
	감자(가을재배만), 무	보장하는 재해로 면적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고 재파종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x 20% x 면적피해율 ※ 면적피해율 = 피해면적 ÷ 보험가입면적	
재정식보장 (보통약관)	양배추, 양파, 배추	보장하는 재해로 면적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고 재정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x 20% x 면적피해율 ※ 면적피해율 = 피해면적 ÷ 보험가입면적	
경작불능 보장 (보통약관)	마늘, 양파, 감자, 콩, 고구마, 양배추, 옥수수, 배추, 무, 보리, 벼	보장하는 재해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x 일정비율 ※ 일정비율은 하기 표 참조	
농업수입 감소보장 (보통약관)	마늘, 양파, 감자, 콩, 고구마, 양배추, 옥수수, 단감, 복숭아, 감귤, 배추, 무, 보리, 벼	보장하는 재해로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과거수입형	보험가입금액 x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피해율=(기준수입 – 실제수입)÷기 준수입 ※ 기준수입 = 평년수확량 x 기준가격
			기대수입형	기준수입 x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피해율=(기준수입 – 실제수입)÷기 준수입 ※ 기준수입=평년수확량 x max[기준 가격, 수확기가격]
이앙·직파불능보장 (보통약관)	벼(조곡)	보장하는 재해로 농지 전체를 이앙·직파불가	보험가입금액 x 15%	
재이앙·재직파보장 (보통약관)		보장하는 재해로 면적 피해율 10%초과하고, 재이앙·재직파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x 25% x 면적피해율 ※ 면적피해율 = 피해면적 ÷ 보험가입면적	
수확불능 보장 (보통약관)		보장하는 재해로 벼(조곡) 제현율이 65% 미만(벼(조곡) 분질미는 70%)으로 떨어져 정상벼로서 출하가 불가능하게 되고, 계약자가 수확불능보험금을 신청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x 일정비율	
나무손해 보장 (특별약관)	단감	보장하는 재해로 나무에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	보험가입금액 x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피해율 = 피해주수(고사된 나무) ÷ 실제결과 주수 ※ 자기부담비율은 5%로 함	
	복숭아			
	감귤(만감류)			

		생한 경우	
수확량감소 추가보장 (특별약관)	복숭아	보장하는 재해로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x(피해율x 10%) ※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 량+병해충감수량) ÷ 평년수확량 ※ 병해충감수량 = 병해충 입은 과실의 무게 x 0.5 ※ 자기부담비율은 보험가입 시 선택한 비율로 함
	감귤(만감류)		보험가입금액x (피해율 x 10%) ※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 량) ÷ 평년수확량 ※ 자기부담비율은 보험가입 시 선택한 비율로 함
병해충 보장 특별약관	벼(조곡)	병해충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보통약관 담보조항에서 정한 방법 (재이앙·재정식, 경작불능, 수확불능, 농업수입감소)

주3) 경작불능보험금은 보험목적물이 산지폐기 된 것을 확인 후 지급되며, 지급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농지에 대한 보험계약은 소멸한다. 환급보험료는 발생하지 않으며 농업수입감소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주4) 기준가격과 수확기가격의 산출과 적용은 품목별 가격조항에서 정한바에 따른다.

P167

<자기부담비율에 따른 경작불능보험금>

자기부담비율	경작불능보험금
15%형	보험가입금액의 42%
20%형	보험가입금액의 40%
30%형	보험가입금액의 35%
40%형	보험가입금액의 30%

<벼-자기부담비율에 따른 수확불능보험금>

자기부담비율	경작불능보험금
15%형	보험가입금액의 57%
20%형	보험가입금액의 55%
30%형	보험가입금액의 50%
40%형	보험가입금액의 45%

② 수입감소보장 자기부담비율

㉠ 보험계약시 계약자가 선택한 비율(15%, 20%, 30%, 40%)

㉡ 자기부담금 선택 조건: 15%, 20%형, 30%형, 40%형은 제한 없음

단, 15% 적용기준은 아래와 같다.

ⓐ 벼 15%형 가입 조건: 7개 이상 농지 가입시 선택 가능

ⓑ 보기 15%형 가입 조건: 전략작물직불금 수령 농가(벼 재배면적 감축)

ⓒ 콩 15%형 가입 조건: 전년도 전략작물직불금 수령 농가(벼 재배면적 감축) 또는 복수농지 일괄 가입 (4농지 이상)

ⓓ 옥수수: 전략작물직불금(벼 재배면적 감축) 참여 농가

ⓔ 양파: 채소가격안정제 참여 농가

ⓕ 마늘 / 고랭지배추 / 고랭지무 / 고랭지무감자 / 가을배추 / 가을무 : 채소가격안정제 사업 참여 농가

9) 가격 조항

<table>
<tr><th>품목</th><th>기준 가격</th><th>수확기 가격</th></tr>
<tr><td rowspan="2">콩(흑태, 나물용)
마늘, 보리</td><td>과거 5년 연도별 평균 매입가격의 올림픽 평균값</td><td>수확 연도의 평균 매입가격</td></tr>
<tr><td colspan="2">지역농협 매입가격</td></tr>
<tr><td rowspan="2">콩(백태, 서리태)</td><td>과거 5년 연도별 상품 평균가격의 올림픽 평균값에서 가장 최근 연도 유통비용 제외</td><td>수확 연도의 상품 평균가격에서 가장 최근 연도 유통비용 제외</td></tr>
<tr><td colspan="2">양곡도매시장 가격</td></tr>
<tr><td>벼</td><td>과거 5년 연도별 시·군별 농협 RPC 평균 매입가격의 올림픽 평균값</td><td>수확연도의 시·군별 농협 RPC 평균 매입가격</td></tr>
<tr><td>고랭지감자</td><td>과거 5년 강원특별자치도청 수매가격의 올림픽 평균값</td><td>수확연도의 강원특별자치도청 수매가격</td></tr>
<tr><td rowspan="2">나머지 품목</td><td>과거 5년 연도별 상품·보통품 평균가격의 올림픽 평균값에서 가장 최근 연도 유통비용 제외</td><td>수확연도의 상품·보통품 평균가격에서 가장 최근 연두 유통비용 제외</td></tr>
<tr><td colspan="2">가락도매시장 가격, 가락도매시장 경락가격(과수)</td></tr>
</table>

※ 하나의 농지(과수원)에 품종이나 용도 등으로 인해 기준가격이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 기준가격과 수확기가격은 품목의 특성에 따라 수확량이나 면적 등의 비율을 반영하여 가중평균방식으로 산출한다.

P187 보험가입기준

1) 과수 품목 : 사과·배·단감·떫은감(과수4종), 감귤(온주밀감류,만감류), 포도(수입보장포함), 복숭아, 자두, 살구, 유자, 오미자, 무화과, 오디, 복분자, 대추, 밤, 호두, 매실, 참다래, 두릅, 블루베리

가) 농작물재해보험

① 계약인수는 과수원 단위로 가입하고 개별 과수원당 최저 보험가입금액은 200만원이다.(단, 종합위험방식 과수4종의 경우 최저 보험가입면적 300㎡) 단, 하나의 리, 동에 있는 각각 보험가입금액 200만원 미만(단, 종합위험방식 4종의 경우 각각 최저 보험가입면적 300㎡)의 두 개의 과수원은 하나의 과수원으로 취급하여 계

약 가

능하다. (단, 2개 과수원 초과 구성 가입은 불가하다.)

※ 2개의 과수원(농지)을 합하여 인수한 경우 1개의 과수원(농지)으로 보고 손해평가를 한다.

2) 논작물 품목

가) 농작물재해보험

㉣ 하나의 농지 내에 품종, 재배방식, 이앙일자가 상이한 경우 품종, 재배방식은 가장 많은 것으로, 이앙일자는 마지막으로 이앙 한 날짜로 함(다만, 숙기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한 품종이 90%이상 재식되어 있지 않으면 가입할 수 없음)

- 벼, 조사료용 벼

㉤ 하나의 농지 내에 파종일자가 상이한 경우 마지막으로 파종한 날짜로 함 – 밀, 귀리

나) 농업수입안정보험(벼, 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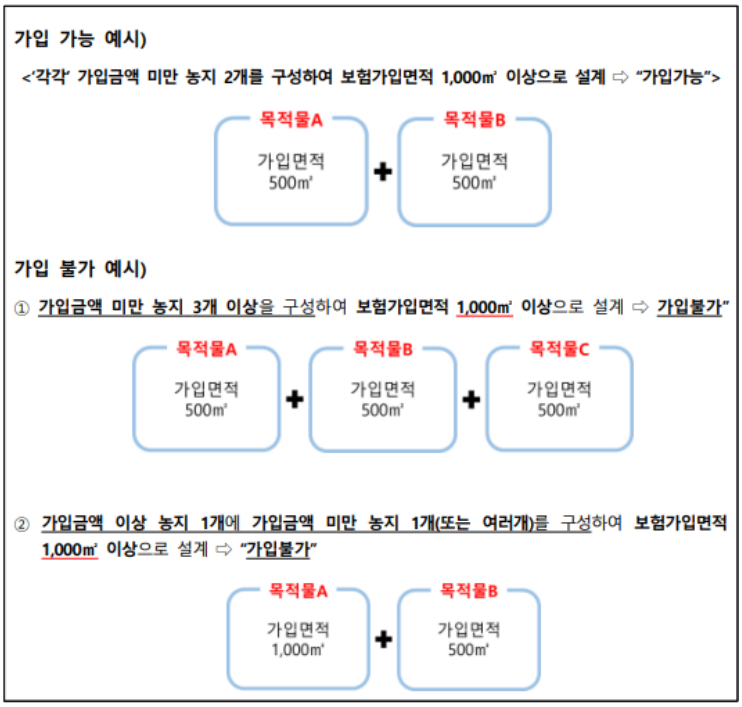
① 벼, 보리의 경우, 계약인수는 농지 단위로 가입하고 개별 농지당 최저 보험가입면적은 1,000㎡이다.

㉠ 벼의 경우 최소가입기준 1,000㎡ 미만의 농지라도 인접 농지의 면적과 합하여 1,000㎡ 이상이 되면 통합하여 하나의 농지로 가입할 수 있다.

㉡ 벼의 경우 통합하는 농지는 2개까지만 가능하며, 가입 후 농지를 분리할 수 없다.

㉢ 보리의 경우 같은 동(洞) 또는 리(理)안에 위치한 가입조건 미만의 두 농지는 하나의 농지로 취급하여 위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입 가능하며, 이 경우 두 농지를 하나의 농지로 본다.

< 가입면적 기준>



나) 농업수입안정보험(포도, 복숭아, 감귤(만감류), 단감)

① 계약인수는 과수원 단위로 가입하고 개별 과수원당 최저 보험가입면적은 1,000㎡이다. 단, 하나의 리, 동에 있는 각각 보험가입면적 1,000㎡미만의 두 개의 과수원은 하나의 과수원으로 취급하여 계약 가능하다. (단, 2개 과수원 초과 구성 가입은 불가하다.)

※ 2개의 과수원(농지)을 합하여 인수한 경우 1개의 과수원(농지)으로 보고 손해평가를 한다.

P189 밭작물 품목

메밀, 콩, 팥, 옥수수, 사료용 옥수수, 파(대파, 쪽파·실파),

당근(가을·월동, 고랭지), 브로콜리, 단호박, 시금치(노지), 무(고랭지, 월동, 가을), 배추(고랭지, 월동, 가을(병충해보장형포함), 봄), 양파, 마늘, 감자(고랭지, 가을, 봄), 고구마, 양배추(가을, 월동), 고추, 양상추, 수박(노지), 생강, 녹두, 참깨

① 계약인수는 농지 단위로 가입하고 개별 농지당 최저 보험가입금액은 50만원이다. 단, 하나의 리, 동에 있는 각각 50만원 미만의 두 개의 농지는 하나의 농지로 취급하여 계약 가능하다.

- 메밀

② 계약인수는 농지 단위로 가입하고 개별 농지당 최저 보험가입금액은 100만원이다. 단, 하나의 리, 동에 있는 각각 100만원 미만의 두 개의 농지는 하나의 농지로 취급하여 계약 가능하다.

- 콩(수입보장의 경우 면적 1,000㎡ 이상), 팥, 옥수수(수입보장의 경우 면적 1,000㎡ 이상), 파(대파, 쪽파·실파), 당근(가을·월동,고랭지), 단호박, 시금치(노지), 무(고랭지(수입보장의 경우 면적 1,000㎡ 이상), 월동, 가을(수입보장의 경우 면적 1,000 ㎡ 이상)), 배추(고랭지(수입보장의 경우 면적 1,000㎡ 이상), 월동, 가을(병충해보장형포함, 수입보장의 경우 면적 1,000㎡ 이상)), 봄), 양상추

③ 계약인수는 농지 단위로 가입하고 개별 농지당 최저 보험가입금액은 200만원이다.

단, 하나의 리, 동에 있는 각각 200만원 미만의 두 개의 농지는 하나의 농지로 취급하여 계약 가능하다.

- 양파(수입보장의 경우 면적 1,000㎡ 이상), 마늘(수입보장의 경우 면적 1,000㎡ 이상), 감자(봄(수입보장의 경우 면적 1,000㎡ 이상)·가을(수입보장의 경우 면적 1,000㎡ 이상)·고랭지(수입보장의 경우 면적 1,000㎡ 이상)), 고구마((수입보장의 경우 면적 1,000㎡ 이상)), 양배추(가을(수입보장의 경우 면적 1,000㎡ 이상)·월동(수입보장의 경우 면적 1,000㎡ 이상)), 고추, 브로콜리, 수박(노지)

⑥ 생강, 녹두, 참깨의 경우, 농지 단위로 가입하고 개별 농지당 최저 가입면적은 300㎡이다.

㉠ 단, 각각 가입면적 300㎡ 미만의 농지라도 인접 농지의 면적과 합하여 300㎡ 이상이 되면 통합하여 하나의 농지로 가입할 수 있다.

㉡ 통합하는 농지는 2개까지만 가능하며 가입 후 농지를 분리할 수 없다

P192 2) 과수 4종(사과 · 배 · 단감 · 떫은감)

① 가입하는 해의 나무 수령(나이)이 다음 기준 미만인 과수원

㉠ 사과 : 밀식재배 3년, 반밀식재배 4년, 일반재배 5년, 다축재배3년(종합위험방식의 경우 밀식재배 2년, 반밀식재배 3년, 일반재배 4년, 다축재배 2년)

㉡ 배 : 3년 (종합위험방식의 경우 2년)

㉢ 단감·떫은감 : 5년 (종합위험방식 및 감소보장(단감)의 경우 4년)

※ 수령(나이)은 나무의 나이를 말하며, 묘목이 가입과수원에 식재된 해를 1년으로 한다.

② 노지재배가 아닌 시설에서 재배하는 과수원(단, 일소피해부보장특약을 가입하는 경우 인수 가능) 종합위험방식의 경우 시설(하우스, 온실 등)에서 가입 품목을 재배하는 과수원

③ 1)공통 ②의 예외조건에도 불구 단감·떫은감이 혼식된 과수원(보험가입금액이 200만원 이상(농업수입감소보장(단감)의 경우1,000㎡ 이상)인 단감·떫은감 품목 중 1개를 선택하여 해당 품목만 가입 가능, 종합위험방식의 경우 보험가입면적이 300㎡ 이상인 단감·떫은감 품목 중 1개를 선택하여 해당 품목만 가입 가능)

④ 시험연구, 체험학습을 위해 재배되는 과수원(단, 200만원 이상 출하증명 가능한 과수원 제외, 종합위험방식의 경우 300㎡ 이상 출하증명 가능한 과수원 제외). 단, 농업수입감소보장의 경우 미해당)

⑪ 소식, 반밀식, 밀식, 다축재배 외의 재배방식으로 경작하는 과수원

⑫ ①지지대와 ②관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다축재배 과수원(①+② 모두 설치 필수, 미설치시 밀식으로 가입)

3) 포도(비가림시설 포함)

④ 비가림 폭이 2.5m ± 20%, 동고가 2.75m ± 15%의 범위를 벗어나는 비가림시설

4) 복숭아

④ 품목별 일반적인 보험대상과 작형, 재배방식, 수확량, 가력 등의 차이가 현저하거나 데이터 부재 등의 사유로 알 수 없는 품종

⑤ 오염 및 훼손 등의 피해를 입어 복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과수원

⑥ 가로수 형태의 과수원

⑦ 농작물재해보험이나 국가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과수원

⑧ 도서 지역의 경우 연륙교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정기선이 운항하지 않는 등 신속한 손해평가가 불가능한 지역에 소재한 과수원

⑨ 도시계획 등에 편입되어 수확 종료 전에 소유권 변동 또는 과수원 형질변경 등이 예정되어 있는 과수원

⑩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내의 과수원(단, 통상적인 영농활동 및 손해평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농지는 인수 가능)

※ 통제보호구역 :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6) 살구

⑪ 품목별 일반적인 보험대상과 작형, 재배방식, 수확량, 가격 등의 차이가 현저하거나 데이터 부재 등의 사유로 알 수 없는 품종

⑫ 품목별로 정해진 재식밀도를 범위를 벗어나는 목적물

⑬ 오염 및 훼손 등의 피해를 입어 복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과수원

⑭ 가로수 형태의 과수원

⑮ 농업수입안전보험이나 국가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과수원

7) 감귤(온주밀감류, 만감류)

⑨ 도서 지역의 경우 연륙교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정기선이 운항하지 않는 등 신속한 손해평가가 불가능한 지역에 소재한 과수원

9) 유자

⑤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내의 농지(단, 통상적인 영농활동 및 손해평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농지는 인수 가능)

※ 통제보호구역 :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⑥ 친환경 재배과수원으로서 일반재배와 결실차이가 현저히 있다고 판단되는 과수원

※ 친환경 재배과수원 자체가 인수제한은 아님에 유의

⑦ 보험가입 이전에 자연재해 등의 피해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정상적인 결실에 영향이 있는 과수원

10) 오미자

⑤ 보험계약 시 피해가 확인된 과수원

⑥ 보험가입 이전에 자연재해 등의 피해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정상적인 결실에 영향이 있는 과수원

⑦ 가입사무소 또는 계약자를 달리하여 중복 가입하는 과수원

⑧ 도서 지역의 경우 연륙교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정기선이 운항하지 않는 등 신속한 손해평가가 불가능한 지역에 소재한 과수원

⑨ 도시계획 등에 편입되어 수확 종료 전에 소유권 변동 또는 과수원 형질변경 등이 예정되어 있는 과수원

⑩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내의 농지(단, 통상적인 영농활동 및 손해평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농지는 인수 가능)

※ 통제보호구역 :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범

위 이내의 지역

13) 무화과

⑧ 품목별 일반적인 보험대상과 작형, 재배방식, 수확량, 가격 등의 차이가 현저하거나 데이터 부재 등의 사유로 알 수 없는 품종

⑨ 가로수 형태의 과수원

⑩ 도서 지역의 경우 연륙교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정기선이 운항하지 않는 등 신속한 손해평가가 불가능한 지역에 소재한 과수원

⑪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내의 과수원(단, 통상적인 영농활동 및 손해평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과수원은 인수 가능)

※ 통제보호구역 :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14) 참다래(비가림시설 포함)

⑮ 레드키위류, 토종다래류 품종

15) 대추(비가림시설 포함)

⑬ 성목 이식 과수원

※ 단, 이식 과수원의 경우, 나무를 이식한 해를 1년으로 하여 4년차가 된 해에 4년생으로 가입 허용

17) 호두

⑨ 접목묘의 경우, 신령 품종이 아닌 나무(예 : 왜성호두)

19) 블루베리

⑪ 품목별 일반적인 보험대상과 작형, 재배방식, 수확량, 가격 등의 차이가 현저하거나 데이터 부재 등의 사유로 알 수 없는 품종

⑫ 가로수 형태의 과수원

⑬ 포트재배의 경우, 부피 기준 60L 미만이거나 지름 기준 45cm 미만인 경우

나. 논작물 품목 (수입감소보장 포함) 인수 제한 목적물

1) 공통 ⑪ 도서 지역의 경우 삭제

2) 벼

① 밭벼(농립나1호, 상남밭벼 등)를 재배하는 농지

3) 조사료용 벼

② 밭벼(농립나1호, 상남밭벼 등)를 재배하는 농지

4) 밀

⑤ 시설(비닐하우스, 온실 등)에서 재배하는 농지

⑥ 하천부지, 상습침수 지역에 소재한 농지 (공부상이 아닌 실질적으로 하천에 소재한 농 지는 인수금지하며, 제방 또는 둑을 쌓아 농지가 물길 밖에 있는 경우에는 인수 가능)

⑦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내의 농지(단, 통상적인 영농활동 및 손해평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농지는 인수 가능)

※ 통제보호구역 :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 선으로부터 3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5) 보리

⑥ 다른 작물과 혼식되어 있는 농지

⑦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내의 농지(단, 통상적인 영농활동 및 손해평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농지는 인수 가능)

※ 통제보호구역 :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 선으로부터 3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6) 귀리

⑦ 하천부지, 상습침수 지역에 소재한 농지 (공부상이 아닌 실질적으로 하천에 소재한 농 지는 인수금지하며, 제방 또는 둑을 쌓아 농지가 물길 밖에 있는 경우에는 인수 가능)

⑧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내의 농지(단, 통상적인 영농활동 및 손해평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농지는 인수 가능)

※ 통제보호구역 :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 선으로부터 3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다. 밭작물

1) 공통: 마늘, 양파, 감자(봄재배, 가을재배, 고랭지재배) 고구마, 양배추, 옥수수, 사료용 옥수수, 콩, 팥, 당근(가을·월동,고랭지), 생강, 녹두, 참깨, 가을무(일반무), 가을배추, 단호박

① 보험가입금액이 200만원 미만인 농지(사료용 옥수수는 제외)

※ 옥수수·콩·팥·가을무(일반무), 가을배추, 당근, 단호박은 100만원 미만인 농지

※ 수입감소보장의 경우 최저 보험가입면적은 1,000㎡ 미만인 농지

⑦ 도서지역의 경우 연륙교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정기선이 운항하지 않는 등 신속한 손해평가가 불가능한 지역에 소재한 농지 ※ 감자(봄재배, 가을재배, 고랭지)) 마늘(종합), 고구마, 양배추(가을재배, 월동재배), 팥,

가을무(일반무) 품목은 미해당

⑧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내의 농지(단, 통상적인 영농활동 및 손해평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농지는 인수가능)

※ 통제보호구역 :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 선으로부터 3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⑨ 기타 인수가 부적절한 농지

2) 마늘

① 대서종 무멀칭(액상멀칭 포함) 시범사업 지역* 內 대서종 무멀칭(액상멀칭 포함) 재배농지 중 판매개시연도 12월 15일 ~ 이듬해 1월 말(피복 필수유지) 기간 동안 피복을 하지 않은 농지

* 대서종 무멀칭(액상멀칭 포함) 시범사업 지역 : 충남·세종·대전·전북·전남·광주·경북·대구·경남·울산·부산·제주에 한함

※ 단, 아래 지역의 경우, 피복 작업을 하지 않더라도 인수 가능

① 전남(목포, 여수, 순천, 광양, 고흥, 장흥, 강진, 해남, 무안, 함평, 완도, 진도,신안, 광주)

② 경남(사천, 양산, 고성, 하동, 창원, 통영, 김해, 거제, 남해, 부산, 울산)

③ 제주도

② 난지형은 8월 31일, 한지형은 10월 10일 이전 파종한 농지

③ 재식밀도가 30,000주/10a 미만인 농지(=30,000주/1,000㎡)

④ 마늘 파종 후 익년 4월 15일 이전에 수확하는 농지

⑤ 액상멀칭 또는 무멀칭농지

⑥ 코끼리 마늘, 주아재배 마늘

※ 단, 주아재배의 경우 2년차 이상부터 가입가능

⑦ 시설재배 농지, 자가채종 농지

⑧ 경계없는 하나의 농지 안에서 한지형과 난지형 마늘을 혼식 재배하는 농지

⑨ 보험계약 시 피해가 확인된 농지

⑩ 시험연구를 위해 재배되는 용지

⑪ 출현율 80% 미만인 농지 (단, 출현율 확인이 불가능한 한지형 마늘은 제외)

3) 양파

⑥ 무멀칭농지(액상멀칭, 종이멀칭 등 비닐 피복 이외의 멀칭 포함)

⑦ 타작물과 혼식되어 있는 경우(단, 전작 식물의 뿌리 부분을 뽑아내지 않더라도 줄기를 제거한 경우에는

후작식물 인수가능)

⑧ 도시계획 등에 편입되어 수확종료 전에 소유권 변동 또는 농지 형질변경 등이 예정되어 있는 농지

7) 고구마

⑥ 직파한 경우, 출현율이 80% 미만인 농지(보험가입 당시 출현 후 고사된 싹은 출현이 안된 것으로 판단)

8) 양배추(가을재배)

① 재식밀도가 평당 8구 미만인 농지

② 소구형 양배추(방울양배추 등), 적채 양배추를 재배하는 농지

③ 목초지, 목야지 등 지목이 목인 농지

④ 시설(비닐하우스, 온실 등)에서 양배추를 재배하는 농지

⑤ 봄작형, 여름(고랭지)작형 양배추 (예 : 판매개시년도 6월 이전에 정식(파종)한 농지)

⑥ 가을양배추 작형에 해당하지 않는 농지 (예 : 수확기가 이듬해(내년)인 농지는 월동양배추 작형이므로 가을양배추 상품 인수제한→월동양배추 가입기간에 월동양배추 상품으로 가입)

⑦ 보험계약 시 피해가 확인된 농지

⑧ 시험연구를 위해 재배되는 농지

9) 양배추(월동재배)

① 관수시설 미설치 농지(물호스는 관수시설 인정 제외)

② 9월 30일을 초과하여 정식한 농지(단, 재정식은 10월 15일 이내 정식)

③ 재식밀도가 평당 8구 미만인 농지

④ 소구형 양배추(방울양배추 등), 적채 양배추를 재배하는 농지

⑤ 목초지, 목야지 등 지목이 목인 농지

⑥ 시설(비닐하우스, 온실 등)에서 양배추를 재배하는 농지

⑦ 봄작형, 여름(고랭지)작형 양배추 (예 : 판매개시년도 6월 이전에 정식(파종)한 농지)

⑧ 월동양배추 작형에 해당하지 않는 농지 (예 : 수확기가 판매개시연도 11월 30일 이전인 농지는 가을양배추 작형이므로 월동양배추 상품 인수제한 → 가을양배추 가입기간(25.8.4~9.5)에 가을양배추 상품으로 가입)

⑨ 보험계약 시 피해가 확인된 농지

14) 수박

① 5월 31일을 초과하여 정식한 농지

② 소과(미니애플수박 등)를 경작하는 농지

③ 보험계약 시 피해가 확인된 농지

④ 시험연구를 위해 재배되는 농지

⑤ 오염 및 훼손 등의 피해를 입어 복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농지

⑥ 출현율 80% 미만인 농지

⑦ 보험가입금액이 200만원 미만인 농지

15) 가을 월동당근

①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미만인 농지

② 미니 당근 재배 농지(대상 품종 : 베이비당근, 미뇽, 파맥스 등)

③ 출현율이 80% 미만인 농지(보험가입 당시 출현 후 고사된 삭은 출현이 안 된 것으로 판단)

④ 재식밀도가 80주/3.3㎡ 미만인 농지

⑤ 파종을 판매개시연도 8월 31일 초과하여 실시한 농지

⑥ 보험계약 시 피해가 확인된 농지

⑦ 목초지, 목야지 등 지목이 목인 농지

⑧ 도시계획 등에 편입되어 수확종료 전에 소유권 변동 또는 농지 형질변경 등이 예정되어 있는 농지

16) 고랭지당근

①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미만인 농지

② 미니 당근 재배 농지(대상 품종 : 베이비당근, 미뇽, 파맥스 등)

③ 고랭지당근 재배에 적합하지 않은(드림7, 산흑전5촌, 양면5촌, 비바리흑전, 후뤠시B등) 품종을 재배하는 농지

④ 파종을 판매개시연도 5월 31일 초과하여 실시한 농지

⑤ 출현율이 80% 미만인 농지(보험가입 당시 출현 후 고사된 삭은 출현이 안 된 것으로 판단)

⑥ 재식밀도가 80주/3.3㎡ 미만인 농지

⑦ 보험계약 시 피해가 확인된 농지

⑧ 목초지, 목야지 등 지목이 목인 농지

⑨ 도시계획 등에 편입되어 수확종료 전에 소유권 변동 또는 농지 형질변경 등이 예정되어 있는 농지

17) 생강

① 보험가입면적 300㎡ 미만인 농지

② 출현율이 80% 미만인 농지(보험가입 당시 출현 후 고사된 삭은 출현이 안 된 것으로 판단)

③ 파종을 4월 15일 ~ 5월 20일 사이에 실시하지 않은 농지

④ 전년도 동일한 농지에 생강을 재배한 농지(연작 농지)

⑤ 직전 4개년 이내에 생강으로 인한 병충해 피해를 입었던 농지

⑥ 재식밀도가 5,550주/10a미만인 농지

⑦ 관수시설 미설치 농지(물호스는 관수시설 인정 제외)

⑧ 보험 계약 시 피해가 확인된 농지

⑨ 다른 작물과 혼식되어 있거나 일부에만 파종되어 있는 농지

⑩ 시험연구를 위해 재배되는 농지

⑪ 도시계획 등에 편입되어 수확종료 전에 소유권 변동 또는 농지 형질변경 등이 예정되어 있는 농지

18) 녹두

① 일시수확(기계수확) 하지 않는 농지

② 보험가입면적 300㎡ 미만인 농지

③ 출현율이 80% 미만인 농지(보험가입 당시 출현 후 고사된 삭은 출현이 안 된 것으로 판단)

④ 보험계약 시 피해가 확인된 농지

⑤ 통상적인 재식간격의 범위를 벗어나 재배하는 농지

- 재식밀도가 16,000주/10a 미만인 농지

19) 참깨

① 보험가입면적 300㎡ 미만인 농지

② 재식밀도 7,000주/10a 미만인 농지

③ 다른 작물과 혼식되어 있거나 일부에만 파종(정식)되어 있는 농지

④ 판매개시연도 4월 16일 이전 혹은 6월 20일 이후에 파종(정식)한 농지

⑤ (파종의 경우) 출현율이 80% 미만인 농지(보험가입 당시 출현 후 고사된 싹은 출현이 안 된 것으로 판단)

⑥ 보험가입 시 당해연도 전작으로 들깨, 참깨를 재배한 농지

⑦ 보험계약 시 피해가 확인된 농지

⑧ 시험연구를 위해 재배되는 농지

⑨ 도시계획 등에 편입되어 수확종료 전에 소유권 변동 또는 농지 형질변경 등이 예정되어 있는 농지

20) 가을무

① 보험계약 시 피해가 확인된 농지

② 판매개시연도 9월 15일 초과하여 가을무(일반무)를 파종한 농지

③ "가을재배" 작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고랭지무, 월동무) 또는 가을무에 해당하지 않는 품종(예 : 알타리무, 단무지무 등)

④ 가을무(일반무) 출현율이 80%미만인 농지(보험가입 당시 출현 후 고사된 싹은 출현이 안된 것으로 판단)

⑤ 보험가입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농지

21) 단호박

① 보험가입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농지

② 왕호박류, 애호박류를 재배하는 농지

③ 노지 여름재배(억제재배)작형

④ 일반단호박, 미니단호박 품종 혼식재배 농지

⑤ 재식밀도가 10a당 400주 이하로 재식한 농지

⑥ 5월 29일을 초과하여 정식한 농지

⑦ 직파한 경우, 출현율이 80% 미만인 농지 (보험가입 당시 출현 후 고사된 싹은 출현이 안 된 것으로 판단)

22) 가을배추(병충해보장형포함)

① 보험가입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농지

② 9월10일 초과하여 실시한 농지

③ 다른 품종 및 품목을 정식한 농지

④ 최근 3년 연속 침수피해를 입은 농지, 다만, 호우주의보 및 호우경보 등 기상특보에 해당되는 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는 제외함

⑤ 오염 및 훼손 등의 피해를 입어 복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농지

⑥ 최근 5년 이내에 간척된 농지

⑦ 농업용지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어 수용 예정 농지로 결정된 농지

⑧ 전환지(개간, 복토 등을 통해 논으로 변경한 농지), 휴경지 등 농지로 변경하여 경작한 지 3년 이내인 농지

바. 밭작물(생산비보장) 품목 인수 제한 목적물

2) 고추

⑪ 동일 농지 내 품종(홍고추·풋고추)이 혼식된 농지(단, 재배비중이 높은 품종 하나로 선택하여 가입하는 경우 인수 가능하며 이후 선택한 품종에 한하여 계약변경 및 보상처리)

4) 메밀

⑨ 메밀 출현율이 80%미만인 농지(보험가입 당시 출현 후 고사된 싹은 출현이 안 된 것으로 판단)

6) 고랭지 배추, 월동 배추, 봄배추

① 보험가입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농지

② 정식을 7월 31일(고랭지배추) 9월25일(월동배추), 4월 20일(봄배추)을 초과하여 실시한 농지

P223 가축재해보험 라. 보험 가입 단위

② 소는 1년 이내 출하 예정인 경우 아래 조건에서 일부 가입 가능

㉠ 신규가입자, 손해율 130% 초과자는 소 이력제 현황의 전부가입

㉡ 손해율 130% 이하자는 80% 이상 가입 시 포괄가입으로 간주한다.

③ 손해율 500% 초과하는 '소' 농가의 경우 국고지원 비율 차등화 50% → 40%

P233 부문별 보상하는 손해

가. 소(牛) 부문(종모우 부문 포함)

한우, 육우, 젖소 주계약 보상하는 손해 자기부담금 비율 10% 추가 → 보험금의 10%, 20%, 30%, 40%

P270 <품목별 현지조사 종류>

구분	상품군	해당 품목	조사 종류
공통조사			피해사실확인조사
과수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	복숭아, 사과, 밤, 자두, 매실, 오미자, 유자, 호두, 살구, 감귤(만감류), 배, 단감, 떫은감	예찰조사 수확량 조사 고사나무조사(나무손해보장특약 가입건)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	감귤(온주밀감류), 오디, 두릅, 블루베리	과실손해조사 고사나무조사(감귤(온주밀감류), 무화과)
	종합위험 비가림과수	대추, 포도(수입보장포함), 이듬해 맺은 참다래 과실	예찰조사 수확량 조사

	손해보장		비가림시설 손해조사(특별약관 가입건)
	적과전 종합 위험방 식Ⅱ	사과, 배, 단감, 떫은감	<예찰조사, 적과전 손해조사> 피해사실확인조사 (확인사항 : 유과타박률, 낙엽률, 나무피해, 미보상비율) ※재해에 따라 확인사항은 다름 고사나무조사(나무손해특약 가입건)
			적과후착과수 조사 고사나무조사(나무손해특약 가입건)
			<적과후 손해조사> 낙과피해조사(단감, 떫은감은 낙엽률 포함), 착과피해조사 ※재해에 따라 조사종류는 다름 고사나무조사(나무손해특약 가입건)
	수확전종합 위험	무화과	종합위험, 특정위험 과실손해조사 고사나무조사(나무손해보장특약 가입건)
		복분자	경작불능조사 종합위험, 특정위험 과실손해조사
논/밭 작물	종합 위험	벼	이앙·직파 불능조사, 재이앙·재직파조사, 경작불능조사, 수확량(수량요소)조사, 수확량(표본)조사, 수확량(전수)조사, 수확불능확인조사
		감자, 마늘(이하 수입보장 포함), 당근, 가을무	재파종조사, 경작불능조사, 수확량(표본)조사
		양파, 고구마(이상 수입보장 포함), 수박(노지), 녹두, 생강, 참깨, 단호박, 가을무, 가을배추(병충해보장형 포함)	재정식조사(고구마제외), 경작불능조사, 수확량(표본)조사
		양배추(수입보장 포함)	재정식조사, 경작불능조사, 수확량(표본)조사
		차(茶)	수확량(표본)조사
		밀, 콩(수입보장 포함), 보리(수입보장 포함), 팥, 옥수수(사료용 옥수수,수입보장 포함)	경작불능조사, 수확량(표본, 전수)조사
		고추, 브로콜리, 무, 파, 시금치(노지)	생산비보장 손해조사, 재파종·재정식조사
		배추, 양상추	재정식조사, 경작불능조사, 생산비보장 손해조사
		메밀	재파종조사, 경작불능조사, 생산비보장 손해조사
		인삼(해가림시설)	해가림시설 손해조사
	특정 위험	인삼(작물)	수확량조사
원예시	종합 위험	<시설하우스> 단동하우스, 연동하	시설하우스 손해조사

설		우스, 유리온실, 버섯재배사	
		<시설작물> 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고추, 호박, 국화, 장미, 멜론, 파프리카, 상추, 부추, 시금치, 배추, 가지, 파, 무, 백합, 카네이션, 미나리, 쑥갓, 느타리, 표고버섯, 양송이, 새송이, 감자	시설작물 손해조사

P273 적과 전 종합위험방식 (대상품목: 사과, 배, 단감, 떫은감)

가. 시기별 조사 종류

구분		계약체결일 24시 ~ 적과종료	적과종료시점	적과종료 이후 ~ 수확기 종료	수확기 종료 ~ 나무손해보장 종료
과실	착과감소 과실 손해보장	예찰조사 적과전 손해조사	적과후착과수 조사	적과후 손해조사	해당없음
	조사항목	피해사실확인 유과타박률 낙엽률(단감, 떫은감) 나무피해	착과수	낙과수 낙엽률(단감, 떫은감) 착과수 피해구성률	-
나무	나무 손해보장	고사나무조사			
	조사항목	고사주수, 미보상주수			
공통		예찰조사			

※ 적과후착과수 조사는 사고여부와 관계없이 가입 전건에 대해 실시

※「적과종료 이전 특정위험 5종 한정 보장 특별약관(이하 "5종 한정 특약")」을 가입한 경우에는 적과종료 이전 사고가 5종[태풍(강풍), 우박, 집중호우, 화재, 지진]시 에만 해당 조사를 실시

※ 일소 피해 사고 시 마다「낙과 및 착과피해 조사」동시 실시

※ 단감, 떫은감 품목은 수확년도 6월1일부터 해당 재해 발생 시 낙엽률 조사를 실시

나. 손해평가 현지조사 방법

과수4종(사과, 배, 단감, 떫은감) 현지조사에는 생육시기별 피해사실확인조사, 적과후착과수 조사, 낙과피해조사, 착과피해조사, 낙엽률조사, 고사나무조사가 있으며 낙엽률조사는 감(단감, 떫은감)품목에 한하여 보상하는 손해로 잎에 피해가 있을 경우 조사하며,「적과전 5종 한정보장특약」(이하 '5종한정특약'이라 한다) 가입 시 적과 전의 우박피해는 유과 타박률 조사를 진행한다.

1) 예찰조사

① 조사목적: 재해발생 전부터 보험 품목에 대한 평가를 위한 생육조사[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3조제4항]

② 조사대상: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한 모든 과수원

③ 대상재해: 해당 없음

④ 조사방법: 생육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조사 실시

P288 2.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방식 및 비가림과수 손해보장방식

가. 시기별 조사 종류

생육시기	재해	조사내용	조사시기	조사방법	비고
수확 전	-	예찰조사	재해발생 전	생육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조사	가입한 모든 과수원
	보장하는 재해 전부	피해사실 확인 조사	사고접수 후 지체없이	보장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발생 여부 조사 (피해사실이 명백한 경우 생략 가능)	전품목
수확 직전	-	착과수 조사	통상적인 적과 종료 시점	해당농지의 최초 품종 수확 직전 총 착과 수를 조사 피해와 관계없이 전 과수원 조사 ・조사방법: 표본조사	포도, 복숭아, 자두, 감귤(만감류), 사과, 배, 단감, 떫은감만 해당
	보장하는 재해 전부	수확량 조사	수확직전	사고발생 농지의 수확량 조사 ・조사방법: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전품목
수확 시작 후 ~ 수확 종료	보장하는 재해 전부	수확량 조사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	사고발생 농지의 수확 중의 수확량 및 감수량의 확인을 통한 수확량조사 ・조사방법: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전품목 (유자 제외)
수확 완료 후 ~ 보험종기	보장하는 재해 전부	고사나무 조사	수확완료 후 보험 종기 전	보장하는 재해로 고사되거나 또는 회생이 불가능한 나무 수를 조사 - 특약 가입 농지만 해당 ・조사방법: 전수조사	수확완료 후 추가 고사나무가 없는 경우 생략 가능

나. 손해평가 현지조사 방법

1) 예찰조사

가) 조사목적 : 재해발생 전부터 보험 품목에 대한 평가를 위한 생육조사[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3조제4항]

나) 조사대상 :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한 모든 과수원

다) 대상재해 : 해당 없음

라) 조사방법 : 생육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조사 실시

2) 피해사실 확인조사

① 조사 대상 : 대상 재해로 사고 접수 농지 및 조사 필요 농지

② 대상 재해 :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 병충해

※ 병충해는 복숭아 (세균구멍병) 및 사과(자연재해성 탄저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대상으로 함.

③ 조사 시기 : 사고 접수 직후 실시

④ 조사 방법 :「피해사실 "조사 방법" 준용」

(1) 나무피해 확인

(가) 고사나무 확인

① 품종·수령별 고사주수를 조사한다. 단 사과, 배, 단감, 떫은감의 경우 품종·재배방식 ·수령별로 조사한다,

②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고사한 나무가 있는 경우 미보상주수로 조사한다.

(나) 미보상주수 확인

①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피해가 있는 나무가 있는 경우 미보상주수로 조사한다.

② 미보상주수는 고사주수와 미고사주수를 구분하여 조사한다.

(다) 나무조사 시 고사나무 또는 미보상나무(고사, 미고사)의 확인을 위해 나무에 표시를 할 수 있다.

(라) 수확불능나무 확인 (사과, 배, 단감, 떫은감)

① 품종·재배방식·수령별 수확불능주수를 조사한다.

②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수확불능 상태인 나무가 있는 경우 미보상주수로 조사한다.

(2) 미보상비율 확인

보상하는 손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해 착과가 감소한 과실의 비율을 조사한다

(3) 보장하는 재해 여부 및 피해 정도 등을 감안 추가조사(수확량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해당 내용을 계약자에게 안내하고, 추가조사가(수확량조사) 필요한 경우에는 수확기에 손해평가반구성 및 추가조사 일정을 수립한다.

4) 수확량조사 (사과, 배, 단감, 떫은감)

다음 호의 조사종류별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가) 착과수 조사

(1) 조사대상 :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한 모든 과수원

(2) 조사시기 : 통상적인 적과 및 자연 낙과(떫은감은 1차 생리적 낙과) 종료 시점

※ 통상적인 적과 및 자연낙과 종료 시점 : 과수원이 위치한 지역(시군 등)의 기상여건 등을 감안하여 통상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해당 과실의 적과가 종료되거나 자연낙과가 종료되는 시점

(3) 조사 방법 :

※ 적과전 종합위험방식의 적과후 착과수 조사방법을 준용함.

나) 착과 피해 조사

(1) 조사 대상 : 보상하는 재해로 착과 피해가 있는 과수원

(2) 조사 시기 : 착과수조사 이후 품종별 피해 확인이 가능한 시기

(3) 조사 방법 :

※ 적과전 종합위험방식의 착과 피해 조사방법을 준용함.

다) 낙과피해조사

(1) 조사 대상 : 보상하는 재해로 낙과 피해가 있는 과수원

(2) 조사 시기 : 착과수조사 이후 사고접수 직후 실시

(3) 조사 방법 :

※ 적과전 종합위험방식의 낙과 피해 조사방법을 준용함

P313 5) 과실손해조사 (대상품목: 블루베리)

② 표본조사

㉠ 표본주 선정

ⓐ 품종별 실제결과주수, 미보상주수 및 고사나무주수를 파악하고, 실제결과주수에서 미보상주수 및 고사나무주수를 빼서 조사대상주수를 계산한다.

ⓑ 농지별 전체 조사대상주수를 기준으로 품목별 표본주수표(별표1 참조)에 따라 농지별 전체 표본주수를 산정한다. 품종별 표본주수는 품종별 조사대상주수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③ 표본가지 선정 : 표본주에서 가장 긴 결과지 1개를 표본가지로 선정한다.

④ 꽃(눈) 피해율 조사 : 표본가지 전체 눈 수(전체 꽃 수) 조사 및 피해 눈 수(피해꽃 수)를 조사한다.

(2) 과실손해조사

사고접수 한 농지를 대상으로 사고접수 직후에 조사를 실시한다.

① 보장하는 재해여부 확인

농지 및 작물 상태 등을 감안하여 약관에서 정한 보장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확인하며, 필요시 근거자료(피해사실확인조사 참조)를 확보할 수 있다.

② 표본조사

가) 표본주 선정

① 품종별 실제결과주수, 미보상주수 및 고사나무주수를 파악하고, 실제결과주수에서 미보상주수 및 고사나무주수를 빼서 조사대상주수를 계산한다.

② 농지별 전체 조사대상주수를 기준으로 품목별 표본주수표(별표1 참조)에 따라 농지별 전체 표본주수를 산정한다. 품종별 표본주수는 품종별 조사대상주수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나) 표본가지 선정

표본주에서 가장 긴 결과지 1개를 표본가지로 선정한다

P317 ④ 블루베리

㉠ 과실손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에 피해율에서 자기부담비율을 차감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과실손해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x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피해율 산출

ⓐ 꽃 피해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피해율 = 과실손해피해율 x (1 – 미보상비율) ① 과실손해피해율 = (∑재배종별·수령별 고사주수 ÷ 실제결과주수 x 재배종별 잔여수확량비율) + 재배종별·수령별 조사대상주수 ÷ 실제결과주수) x ((∑재배종별·수령별 표본가지 피해과실 수 x 재배종별 잔여 수확량비율) ÷ ∑재배종별·수령별 표본가지 전체 과실 수

ⓑ 꽃 피해조사를 실시한 경우

① 피해율 = 최종 꽃 피해율 + {(1 - 최종 꽃 피해율) × 과실손해 피해율 × (1 – 미보상비율)} ② 과실손해피해율= (∑재배종별·수령별 고사주수÷실제결과주수 × 재배종별 잔여수확량비율) + {재배종 별·수령별 조사대상주수÷실제결과주수) × ((∑재배종별·수령별 표본가지 피해과실 수 × 재배종별잔여 수확량비율)÷ ∑재배종별·수령별 표본가지 전체 과실 수} ③ 잔여 수확량 비율 * 수확개시 이전 = 1 * 수확개시 이후 = 1 - {(사고일자 – 수확개시일자) ÷ 표준수확일수} (단, 잔여 수확량 비율은 0보다 작을 수 없음) ※ 표준수확일수는 30일 ④ 최종 꽃 피해율 = 최종 꽃 고사율 × 가중치 ⑤ 최종 꽃 고사율 = 꽃눈 고사율 + (1 - 꽃눈 고사율) × 꽃 고사율 ⑥ 꽃눈 고사율 = 피해 꽃눈 수 ÷ 조사 꽃눈 수 ⑦ 꽃 고사율 = 피해 꽃 수 ÷ 조사 꽃 수

P319 ③ 감귤(온주밀감류) 수확기 잔존비율 개정

사고발생 월	잔존비율(%)
12월	(100 – 39) - (0.935 x 사고 발생일자)
1월	(100 – 68) - (0.774 x 사고 발생일자)
2월	(100 – 92) - (0.286 x 사고 발생일자)

P339 논작물(벼, 맥류) 손해평가 및 보험금 산정)

1. 수확감소보장

가. 시기별 조사 종류

조사종류		조사시기
예찰조사		사고접수 전
피해사실확인조사		사고접수 직후
이앙·직파불능 조사(벼만 해당)		이앙한계일(7월 31일) 이후
재이앙·재직파 조사(벼만 해당)		사고 접수 후 ~ 재이앙 직후
경작불능조사		사고 접수 후 ~ 수확 개시 시점
수확불능확인조사(벼만 해당)		수확포기가 확인되는 시점
수확량 조사 (조사료용 벼 제외)	수량요소(벼만 해당)	수확 전 14일 전후
	표본	알곡이 여물어 수확이 가능한 시기
	전수	수확 시

나. 손해평가 현지조사 방법

1) 예찰조사

가) 사고가 접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 목적의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한다.

(1) 가입 전 사고발생 여부 확인

(2)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여부 확인

(3)보상하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수확량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확인

나)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입농지 상태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내용을 조사표에 작성하고 농업보험부에 보고한다.

P350 4) 수확감소보험금 산정(조사료용 벼 제외)

② 지급거절사유

㉠ 경작불능보험금 및 수확불능보험금의 규정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계약이 소멸된 경우에는 수확감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수확불능보험금 규정은 벼 품목만 해당됨)

㉡ 경작불능보험금의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재해로 인해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인 경우 수확감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벼 품목만 해당)

P354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 품목 변동

대상품목: 고구마, 옥수수(사료용 옥수수), 콩, 양배추(가을, 월동), 양파, 마늘, 차(茶), 감자(봄재배, 고랭지재배, 가을재배), 팥, 수박(노지), 단호박, 참깨, 당근(가을·월동, 고랭지), 녹두, 생강, 가을무(일반무), 가을배추(병충해보장형 포함

나. 손해평가 현지조사 방법

1) 예찰조사

가) 조사 목적: 사고가 접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 목적의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한다.

(1) 가입 전 사고발생 여부 확인

(2)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여부 확인

(3) 보상하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수확량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확인

나)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입농지 상태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내용을 조사표에 작성하고 농업보험부에 보고한다.

다) 예찰조사 분할평가(가을배추(병충해보장형) 품목에만 해당)

(1) 조사 대상 : 사고여부와 관계없이 가입한 모든 농지

(2) 조사 내용 : 방제노력 적정성 확인과 생육기간동안 피해상황 분할평가(재배초기, 중기, 수확기)

2) 재파종조사 (대상품목: 마늘, 당근, 가을무, 감자(가을재배))

㉢ 재파종 보험금 지급 대상 여부 조사(재파종 전(前)조사)

(가) 마늘(난지형 마늘만 해당)

ⓐ 표본구간 수 산정 : 조사대상 면적 규모에 따라 적정 표본구간수<별표1> 이상의 표본구간수를 산정한다. 다만 가입면적과 실제 경작면적이 10% 이상 차이가 나 계약 변경 대상일 경우에는 실제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표본구간수를 산정한다.

(나) 당근, 가을무, 감자(가을재배)

ⓐ 피해면적 확인 : GPS면적측정기 또는 지형도 등을 이용하여 실제 경작면적대비 피해면적을 비교 및 조사한다.

ⓑ 피해면적의 판정기준 : 작물이 고사되거나 살아 있으나 수확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 면적

㉣ 재파종 이행완료 여부 조사(재파종 후(後)조사)

(가) 마늘

① 조사 대상 농지 및 조사 시기 확인

재파종 보험금 대상 여부 조사(재파종 전(前)조사) 시 재파종 보험금 대상으로 확인된 농지에 대하여, 재파종이 완료된 이후 조사를 진행한다.

② 표본구간 선정

재파종 보험금 대상 여부 조사(재파종 전(前)조사)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표본 구간을 선정한다.

③ 표본구간 길이 및 파종주수 조사

선정된 표본구간별로 이랑 길이, 이랑 폭 및 파종주수를 조사한다.

(나) 당근, 가을무, 감자(가을재배)

재파종 보험금 대상 여부 조사(전조사) 시 재파종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확인된 농지에 대하여, 재파종이 완료되었는지를 조사한다. 피해면적 중 일부에 대해서만 재파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파종이 이루어지지 않은 면적은 피해 면적에서 제외한다.

3) 재정식조사 (대상품목: 양배추, 단호박, 가을배추(병충해보장형 포함), 양파)

4) 경작불능조사

① 적용 품목: 콩, 팥, 옥수수(사료용 옥수수), 고구마, 감자(고랭지, 봄, 가을재배), 양파, 마늘, 양배추(가을, 월동), 수박, 단호박, 가을배추, 가을배추(병충해보장형), 참깨, 당근(고랭지, 가을·월동), 가을무(일반무), 생강, 녹두

5) 수확량 조사(사료용 옥수수 제외)

① 적용 품목: 콩, 옥수수, 고구마, 감자(고랭지재배), 양파, 팥, 마늘, 감자(가을, 봄재배), 양배추(가을·월동), 차(茶), 수박, 단호박, 가을배추, 가을배추(병충해보장형), 참깨, 당근(고랭지, 가을·월동), 가을무(일반무), 생강, 녹두

P358 <품목별 수확량조사 적기>

품목	수확량조사 적기
양파	양파의 비대가 종료된 시점 (식물체의 도복이 완료된 때)
마늘	마늘의 비대가 종료된 시점 (잎과 줄기가 1/2~2/3 황변하여 말랐을 때와 해당 지역의 통상 수확기가 도래하였을 때)
고구마	고구마의 비대가 종료된 시점 (삽식일로부터 120일 이후에 농지별로 적용) ※ 삽식 : 고구마의 줄기를 잘라 흙속에 꽂아 뿌리내리는 방법
감자(고랭지재배)	감자의 비대가 종료된 시점 (파종일로부터 110일 이후)
감자(봄재배)	감자의 비대가 종료된 시점

	(파종일로부터 95일 이후
감자(가을재배)	감자의 비대가 종료된 시점 (파종일로부터 제주지역은 110일 이후, 이외 지역은 95일 이후)
옥수수	옥수수의 수확 적기 (수염이 나온 후 25일 이후)
차(茶)	조사 가능일 직전 (조사 가능일은 대상 농지에 식재된 차나무의 대다수 신초가 1심2엽의 형태를 형성하며 수확이 가능할 정도의 크기(신초장 4.8cm 이상, 엽장 2.8cm 이상, 엽폭 0.9cm 이상)로 자란 시기를 의미하며, 해당 시기가 수확연도 5월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확년도 5월 10일을 기준으로 함)
콩	콩의 수확 적기 (콩잎이 누렇게 변하여 떨어지고 꼬투리의 80~90% 이상이 고유한 성숙(황 색)색깔로 변하는 시기인 생리적 성숙기로부터 7~14일이 지난 시기)
팥	팥의 수확 적기 (꼬투리가 70~80% 이상이 성숙한 시기)
양배추	양배추의 수확 적기 (결구 형성이 완료된 때)
수박	수확적기 (꽃가루받이 후 또는 착과후 35~45일
단호박	단호박 수확적기 (과병부가 세로로 갈색 균열이 발생된 시기)
가을배추(병충해보장형 포함)	배추의 수확 적기 (결구 형성이 완료된 때)
참깨	참깨의 아랫 단 꼬투리 2~3개가 벌어지는 시기(7월말 ~ 8월말)
당근	당근 수확적기 (겉잎이 지면에 닿을 정도로 늘어진 시기)
가을무(일반무)	무의 수확 적기(결구 형성이 완료된 때)
생강	생강의 비대가 종료된 시점 (파종 후 180일 이후) - 경북지역은 10월 30일, 충남지역 11월 초까지 수확 종료
녹두	8월 초 ~ 10월(녹두 수확 적기로 생육 정지(수확 예정 3~4일 전 염수 살포 등) 및 일시수확(기계수확) 가능한 상태로 콩 꼬투리 70~80% 이상이 고유한 성숙(흑갈색)색깔로 변하는 시기)

㉱ 조사 방법 결정 : 품목 및 재배 방법 등을 참고하여 다음의 적절한 조사 방법을 선택한다.

ⓐ 표본조사 방법

㉮ 적용 품목 : 콩, 옥수수, 고구마, 감자(고랭지재배, 봄재배, 가을재배), 양파, 팥, 마늘, 감자(가을, 봄재배), 양배추(가을,월동), 차(茶), 수박, 단호박, 가을배추, 가을배추(병충해보장형), 참깨, 당근(고랭지, 가을·월동), 가을무(일반무), 생강, 녹두

㉯ 표본구간수 산정 : 조사대상 면적 규모에 따라 적정 표본구간수<별표1> 이상의 표본구간수를 산정한다. 다만, 가입면적과 실제 경작면적이 10% 이상 차이가 나 계약변경 대상일 경우에는 실제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표본구간수를 산정한다.

㉰ 표본구간 선정 : 선정한 표본구간수를 바탕으로 재배 방법 및 품종 등을 감안하여 조사 대상 면적에 동일한 간격으로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표본구간을 선정한다. 다만, 선정한 구간이 해당 지점 작물의 수확량이 현저히 많거나 적어서 표본으로 대표성을 가지기 어려운 경우 등으로 표본으로 부적합한 경우에는 가까운 위치의 다른 구간을 표본구간으로 선정한다.

㉱ 표본구간 면적 및 수확량 조사 : 해당 품목별로 선정된 표본구간의 면적을 조사하고, 해당 표본구간에서 수확한 작물의 수확량을 조사한다.

㉲ 양파, 마늘의 경우 지역별 수확 적기보다 일찍 조사를 하는 경우, 수확 적기까지 잔여일수별 비대지수를 추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품목별 표본구간 면적조사 방법>

품목	표본구간 면적 조사 방법
양파, 마늘, 단호박, 당근	이랑폭 2m미만 :이랑길이(5주 이상) 및 이랑폭 조사 이랑폭 2m이상 :이랑길이(3주 이상) 및 이랑폭 조사
고구마, 양배추, 감자, 옥수수	이랑길이(5주 이상) 및 이랑폭 조사
차(茶)	규격의 테(0.04㎡) 사용
콩, 팥	점파 : 이랑길이(4주 이상) 및 이랑폭 조사 산파 : 규격의 원형(1㎡) 이용 또는 표본구간의 가로·세로 길이 조사
수박(노지)	이랑길이(10주 이상) 및 이랑폭 조사
가을배추 (병충해보장형 포함)	이랑길이(6주 이상) 및 이랑폭 조사
참깨	이랑길이(5주 이상) 및 이랑폭 조사
가을무(일반무)	이랑길이(10주 이상) 및 이랑폭 조사
생강	1~2줄 재배 : 이랑길이(5주) 및 이랑폭 조사 3줄이상 재배 : 이랑길이(4주) 및 이랑폭 조사
녹두	점파 : 이랑길이(4주 이상) 및 이랑폭 조사 산파 : 규격의 원형(1㎡) 이용 또는 표본구간의 가로·세로 길이 조사

<품목별 표본구간별 수확량 조사 방법> 안 적힌 품목은 동일함

품목	표본구간별 수확량 조사 방법
감자	표본구간 내 작물을 수확한 후 정상 감자, 병충해별 10% 이하, 11%~20% 이하, 21%~30% 이하, 31%~40%이하, 41%~50%이하, 51%~60%이하, 61%~70%이하, 71%~80%이하, 81%~90%이하, 91%~100%이하 발병 감자로 구분하여 해당 병충해명과 무게를 조사하고 최대 지름이 5cm미만이거나 피해정도 50%이상인 감자의 무게는 실제 무게의 50%를 조사 무게로 함
단호박	표본구간 내 작물을 수확한 후 과병부(꼭지)를 절단하여 각각의 단호박 무게를 조사 (보상하는 재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일반 시장 출하가 불가

	능하고 가공용으로도 공 급될 수 없는 작물은 피해로 인정하고 해당무게의 0%를 수확량으로 인정)
가을배추(병충해보장형포함)	표본구간 내 작물의 뿌리를 절단하여 수확(외엽 2겹 내외 제거)한 후 무게를 조사
참깨	- 표본구간 내 수확 가능한 참깨 꼬투리의 총 개수 확인 - 참깨 환산중량 조사를 위해 수확가능한 꼬투리 50~60개 추출 - 꼬투리를 제거한 참깨(종실)의 중량 및 함수율 조사(3회 평균)
당근	표본구간 내 작물을 수확하여 줄기를 절단한 후 정상 당근과 80%피해 당근(일반시장 출하가 불가능하나, 가공용으로 공급될 수 있는 품질. 단, 가공공장 공급 및 판매 여부 와 무관), 100%피해 당근(일반시장 출하가 불가능하고 가공용으로 공급될 수 없는 품 질)으로 구분하여 무게를 조사
가을무(일반무)	표본구간 내 작물을 수확하여 무청을 제거한 후 무게를 조사
생강	표본구간 내 생강을 수확하여 덩이와 가깝게 윗부분 줄기를 절단하여 무게를 조사
녹두	표본구간 내 녹두를 수확하여 꼬투리를 제거한 후 녹두 종실의 무게 및 함수율 조사(3 회 평균)

P362 다. 보험금 산정 방법 및 지급기준

2) 재파종보험금 산정 (대상품목 : 마늘, 당근, 가을무(일반무), 감자(가을재배))

가) 지급 사유

① 마늘(난지형 마늘에 만 해당)

보험기간 내에 보장하는 재해로 10a당 식물체 주수가 30,000주보다 적어지고, 10a당 30,000주 이상으로 재파종한 경우 재파종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하며 1회에 한하여 보상한다

지급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 35% × 표준 피해율 ※ 표준 피해율(10a 기준) = (30,000 - 식물체 주수) ÷ 30,000

② 고랭지당근, 가을·월동당근

보장하는 재해로 면적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고 재파종한 경우 재파종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하며 1회에 한하여 보상한다.

지급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 15% × 면적 피해율 ※ 면적 피해율 = 피해면적 ÷ 보험가입면적

③ 가을무(일반무), 감자(가을재배)

보장하는 재해로 면적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고 재파종한 경우 재파종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하며 1회에 한하여 보상한다.

지급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 20% × 면적 피해율 ※ 면적 피해율 = 피해면적 ÷ 보험가입면적

3) 재정식보험금 산정 (대상품목: 가을양배추, 월동양배추, 단호박, 가을배추, 가을배추(병충해보장형), 양파)

4) 경작불능보험금 산정 (적용품목: 콩, 팥, 옥수수·사료용 옥수수, 고구마, 감자(고랭지재배), 양파, 마늘, 감자(봄재배, 가을재배), 양배추(가을, 월동), 수박, 단호박, 가을배추, 가을배추(병충해보장형), 참깨, 고랭지당근, 가을·월동당근, 가을무(일반무), 생강, 녹두

<품목별 자기부담비율별 경작불능보험금 보장비율>

품목	자기부담비율				
	10%형	15%형	20%형	30%형	40%형
고구마, 옥수수, 감자(봄재배), 감자(고랭지재배), 감자(가을재배), 마늘, 콩, 양파, 단호박, 당근(가을·월동), 팥, 양배추	45%	42%	40%	35%	30%
양배추, 팥, 수박, 참깨, 고랭지당근(고랭지), 생강, 녹두, 가을배추, 가을배추(병충해보장형), 가을무(일반무)	-	-	40%	35%	30%

5) 수확감소보험금 산정

㉠ 적용 품목은 콩, 옥수수(사료용 옥수수 제외), 고구마, 감자(봄재재, 가을재배, 고랭지재배), 마늘, 양배추(가을, 월동), 차(茶), 수박, 단호박, 가을배추, 가을배추(병충해보장형), 참깨, 당근(고랭지, 가을·월동), 가을무(일반무), 생강, 녹두

<품목별 표본구간 수확량 합계 산정 방법>

<table>
<tr><th>품목</th><th>표본구간 수확량 합계 산정 방법</th></tr>
<tr><td>감자, 수박(노지), 생강, 단호박, 가을무(일반무), 가을배추(병충해보장형 포함)</td><td>표본구간별 작물 무게의 합계</td></tr>
<tr><td>양배추, 당근</td><td>표본구간별 정상 양배추 무게의 합계에 80%형 양배추의 무게에 0.2를 곱한 값을 더하여 산정</td></tr>
<tr><td>차(茶)</td><td>표본구간별로 수확한 새싹 무게를 수확한 새싹수로 나눈 값에 기수확 새싹수와 기수확지수를 곱하고, 여기에 수확한 새싹 무게를 더하여 산정
* 기수확지수는 기수확비율(기수확 새싹수를 전체 새싹수(기수확 새싹수와 수확한 새싹수를 더한 값)로 나눈값)에 따라 산출</td></tr>
<tr><td>양파, 마늘</td><td>표본구간별 작물 무게의 합계에 누적비대추정지수에 1을 더한 값(누적비대추정지수 + 1)을 곱하여 산정

<품목별 비대추정지수>
<table>
<tr><th>양파</th><th>마늘</th></tr>
<tr><td>2.2% / 1일</td><td>0.8% / 1일</td></tr>
</table>
[단, 마늘의 경우 이 수치에 품종별 환산계수를 곱하여 산정, (품종별 환산계수: 난</td></tr>
</table>

<table>
<tr><td></td><td>지형 홍산 0.72 / 한지형 0.7)]
환산계수 : 건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분 감소분을 고려한 계수</td></tr>
<tr><td>고구마</td><td>표본구간별 정상 고구마의 무게 합계에 50%형 고구마의 무게에 0.5 80%형 고구마의 무게에 0.2를 곱한 값을 더하여 산정</td></tr>
<tr><td>옥수수</td><td>표본구간 내 수확한 옥수수 중 “하”항목의 개수에 “중” 항목 개수의 0.5를 곱한 값을 더한 후 품종별 표준중량, 재식시기지수, 재식밀도지수를 각각 곱하여 표본구간 피해수확량을 산정

<품종별 표준중량(g)><table><tr><th>미백 2호</th><th>대학찰(연농 2호)</th><th>미흑찰 등</th></tr><tr><td>180</td><td>160</td><td>190</td></tr></table></td></tr>
<tr><td>콩, 팥</td><td>표본구간별 종실중량에 1에서 함수율을 뺀 값을 곱한 후 다시 0.86을 나누어 산정한 중량의 합계</td></tr>
<tr><td>참깨</td><td>표본구간별 참깨 종실중량에 1에서 함수율을 뺀 값을 곱한 후 다시 0.9를 나누어 산정한 중량의 합계</td></tr>
<tr><td>녹두</td><td>표본구간별 녹두 종실증량에 1에서 함수율을 뺀 값을 곱한 후 다시 0.87을 나누어 산정한 중량의 합계</td></tr>
</table>

P365

<품목별 표본구간 면적 합계 산정 방법>

품목	표본구간 면적 합계 산정 방법
양파, 마늘, 고구마, 감자, 옥수수, 양배추, 수박(노지), 참깨, 생강, 녹두, 단호박, 당근, 가을무(일반무), 가을배추(병충해보장형포함)	표본구간별 면적(이랑 길이 × 이랑 폭)의 합계
콩, 팥	표본구간별 면적(이랑 길이(또는 세로 길이) × 이랑 폭(또는 가로 길이))의 합계 단, 규격의 원형(1㎡)을 이용하여 조사한 경우에는 표 본구간수에 규격 면적(1㎡)을 곱해 산정
차(茶)	표본구간수에 규격 면적(0.08㎡)을 곱하여 산정

ⓓ 미보상감수량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 수확량) x 미보상비율

P367 2. 종합위험 생산비보장방식

(대상품목 : 고추, 브로콜리, 배추(고랭지·월동·가을·봄), 무(고랭지·월동·가을(단무지무, 알타리무)), 대파, 쪽파·실파[1형], 메밀, 시금치(노지), 양상추)

나. 손해평가 현지조사 방법

1) 예찰조사

가) 조사 목적: 사고가 접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 목적의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한다.

(1) 가입 전 사고발생 여부 확인

(2)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여부 확인

(3) 보상하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수확량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확인

나)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입농지 상태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내용을 조사표에 작성하고 농업보험부에 보고한다.

다) 예찰조사 분할평가(가을배추(병충해보장형) 품목에만 해당)

(1) 조사 대상 : 사고여부와 관계없이 가입한 모든 농지

(2) 조사 내용 : 방제노력 적정성 확인과 생육기간동안 피해상황 분할평가(재배초기, 중기, 수확기)

2) 피해사실 확인조사

① 적용 품목 : 브로콜리, 배추(봄,고랭지,월동), 무(고랭지, 가을무(단무지무, 알타리무), 파, 메밀, 시금치, 양상추

4) 경작불능조사

① 적용 품목 : 배추(봄,고랭지,월동), 무(고랭지, 가을무(단무지무, 알타리무), 파, 메밀, 시금치, 양상추

ⓕ당근 ⓗ단호박 삭제

P373 다. 보험금 산정 방법 및 지급기준

1) 재파종·재정식보험금 산정(생산비보장 밭작물 전 품목)

2) 경작불능보험금의 산정(배추, 무, 파, 시금치, 양상추, 메밀)

P377 ④ 배추, 무, 파, 시금치, 양상추

P382 <연근별 기준수확량(가입 당시 년근 기준)>

구분	2년근	3년근	4년근	5년근
불량	0.55	0.70	0.78	0.81

표준	0.50	0.64	0.71	0.73
우수	0.45	0.57	0.64	0.66

P383 ③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 비용손해 중 손해방지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잔존물 보전비용57), 기타 협력비용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급한다. 단, 농지별 손해방지비용은 20만원을 한도로 지급한다.

구 분	초과보상	비례보상
손해방지비용	O	O
대위권 보전비용	O	O
잔존물 보전비용	O	O
기타 협력비용	O	X

P387 가. 원예시설 2) 부대시설

④ 농업용 시설물 내부에 고정, 연결 부착되고 동력을 공급받아 시설재배 농작물 대상으로 활용하는 선별기(단, 휴대용 선별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P406 1. 과수(포도(비가림시설보장), 복숭아, 감귤(만감류), 단감)

가. 시기별 조사종류

1) 조사종류: 예찰조사, (종합위험방식과 동일) 피해사실 확인조사, 착과수조사, 과중조사, 착과피해조사, 낙과피해조사, 고사나무조사, 비가림시설피해 조사

나. 손해평가 현지조사 방법

1) 예찰조사

가) 조사목적 : 재해발생 전부터 보험품목에 대한 평가를 위한 생육조사

나) 조사대상 :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한 모든 과수원

다) 대상재해 : 해당 없음

라) 조사방법 : 생육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조사

P410 4) 비가림시설 피해조사(포도만 해당)

6) 수확량조사(단감)

본 항의 수확량조사는 단감 품목에만 해당하며, 다음 호의 조사 종류별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가) 착과수조사

(1) 조사 대상 :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에 가입한 농지

(2) 대상 재해 : 해당 없음

(3) 조사 시기 : 통상적인 적과 종료 시점(통상적인 적과 종료라 함은 과수원이 위치한 지역(시군 등)의 기상여건 등을 감안하여 통상적 으로 해당 지역에서 해당 과실의 적과가 종료되는 시점을 말함). 단, 최추수확 시기를 넘길 수 없다.

(4) 조사 방법

(가) 주수 조사 : 농지내 품종별·재배방식·수령별 실제결과주수, 고사주수 및 미보상주수, 수확불능주수를 파악한다.

(나) 조사 대상주수 계산 : 품종별·재배방식·수령별 실제결과주수에서 고사나무주수, 미보상(고사, 미고사)주수, 수확불능주수를 빼서 조사 대상주수를 계산한다.

(다) 표본주수 산정

① 과수원별 전체 조사 대상주수를 기준으로 품목별 표본주수표<별표1>에 따라 농지별 전체 표본주수를 산정한다.

② 적정 표본주수는 품종별·재배방식·수령별 조사 대상주수에 비례하여 산정하며, 품종별·재배방식·수령별 적정표본주수의 합은 전체 표본주수 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라) 표본주 선정

① 조사대상주수를 농지별 표본주수로 나눈 표본주 간격에 따라 표본주 선정 후 해당 표본주에 표시리본을 부착

② 동일품종·동일수령의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품종별·재배방식·수령별 조사대상주수의 특성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표본주를 선정

(마) 착과된 전체 과실수 조사 : 선정된 표본주별로 착과된 전체 과실수를 조사하되, 품종별 수확 시기 차이에 따른 자연낙과를 감안한다.

(바) 품목별 미보상비율 적용표<별표2>에 따라 미보상비율을 조사한다.

나) 착과피해조사

(1) 착과피해조사는 착과피해를 유발하는 재해가 있을 경우에만 시행하며, 해당 재해 여부는 재해의 종류와 과실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조사자가 판단한다.

(2) 착과된 과실에 대한 피해 정도를 조사하는 것으로 해당 피해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시기에 실시하며, 필요 시 품종별로 각각 실시할 수 있다.

(3) 조사 방법

(가) 착과수조사 : 착과피해조사에서는 가장 먼저 착과수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때 확인할 착과수는 수확 전 착과수조사와는 별개의 조사를 의미한다. 다만, 이전 실시한 착과수조사(이전 착과피해조사 시 실시한 착과수조사 포함)의 착과수와 착과피해조사 시점의 착과수가 큰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착과수 확인 없이

이전에 실시한 착과수조사 값으로 대체 할 수 있다.

① 주수 조사 : 농지내 품종별·재배방식·수령별 실제결과주수, 고사주수, 수확불능주수, 미보상주수 및 수확완료주수를 파악한다.

② 조사대상주수 계산 : 품종별·재배방식·수령별 실제결과주수에서 고사주수, 수확불능주수, 미보상주수 및 수확완료주수를 뺀 조사 대상주수를 계산한다.

③ 적정 표본주수 산정 : 조사 대상주수를 기준으로 적정 표본주수를 산정한다.

④ 이후 조사 방법은 이전 착과수조사 방법과 같다.

(나) 품종별 표본과실 선정 및 피해구성조사

① 표본과실 추출 : 착과수 확인이 끝나면 수확이 완료되지 않은 품종별로 표본 과실을 추출한다. 이때 추출하는 표본 과실수는 품종별 1주 이상 (과수원당 3주 이상)의 표본주에서 추출한다.

② 피해구성조사 : 추출한 표본 과실을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인정계수표"<별표3> 에 따라 품종별로 구분하여 해당 과실 개수를 조사한다.

(다) 조사 당시 수확이 완료된 품종이 있거나 피해가 경미하여 피해구성조사가 의미가 없을 때에는 품종별로 피해구성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 낙과피해조사

(1) 낙과피해조사는 착과수조사 이후 낙과피해가 발생한 농지에 대하여 실시한다.

(2) 조사 방법

(가) 보장하는 재해 여부 심사 : 농지 및 작물 상태 등을 감안하여 보장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확인하며, 필요시에는 이에 대한 근거자료(피해사실 확인조사 참조)를 확보한다.

(나) 전수조사 : 낙과수 전수조사 시에는 과수원 내 전체 낙과를 조사한다. 낙과수 확인이 끝나면 낙과 중 100개 이상을 무작위로 추출하고「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인정계수(별표3)」에 따라 구분하여 해당 과실 개수를 조사한다. (단, 전체 낙과수가 100개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기준 미만으로도 조사 가능)

(다) 표본조사

① 조사대상주수를 기준으로 과수원별 전체 표본주수를 산정하되(별표1-1 참조, 다만 거대재해 등 필요 시 표본조사의 표본주수는 정해진 값의 1/2이하로도 가능), 품종·재배방식·수령별 표본주수는 품종·재배방식·수령별

조사대상주수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② 조사대상주수의 특성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표본나무를 선정하고, 표본나무별로 수관면적 내에 있는 낙과수를 조사한다.

③ 낙과수 확인이 끝나면 낙과 중 100개 이상을 무작위로 추출하고「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인정계수(별표3)」에 따라 구분하여 해당 과실 개수를 조사한다. (단, 전체 낙과수가 100개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기준 미만으로도 조사 가능)

7) 고사나무조사(단감)

본 항의 고사나무조사는 다음 각 호의 조사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가) 나무손해보장 특약 가입 여부 및 사고 접수 여부 확인 해당 특약을 가입한 농지 중 사고가 접수된 모든 농지에 대해서 고사나무조사를 실시한다.

나) 조사 시기의 결정 : 고사나무조사는 보험 전 기간 내 필요 시 실사하되 나무손해보장특약 종료 시점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 보장하는 재해 여부 심사 : 농지 및 작물 상태 등을 감안하여 보장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확인하며, 필요시에는 이에 대한 근거 자료(피해사실 확인조사 참조)를 확보할 수 있다.

라) 주수 조사

(1) 품종별·재배방식·수령별로 실제결과주수, 고사주수, 미보상 주수, 수확불능주수를 조사한다

(2)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고사한 나무가 있는 경우 미보상 주수 중 고사로 조사한다.

(3) 추가 고사주수가 없는 경우(계약자 유선 확인 등)에는 고사나무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4) 고사나무 또는 미보상나무의 확인을 위해 나무에 표시를 할 수 있다

(5) 무피해나무 착과수조사

(가) 최초 착과수 조사이후 발생한 재해로 인한 고사주수, 수확불능주수가 있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나) 무피해나무는 고사나무, 수확불능나무, 미보상나무, 수확완료나무를 제외한 나무를 의미한다.

(다) 품종·재배방식·수령별 무피해나무 중 가장 평균적인 나무를 1주 이상 선정하여 품종·재배방식·수령별 무피해나무 1주당 착과수를 계산한다. (단, 선정한 나무에서 금번 재해로 인해 낙과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실을 착과수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라) 다만, 이전 실시한 (최초)착과수조사(이전 착과피해조사 시 실시한 착과수조사포함)의 착과수와 금차 조사 시의 착과수가 큰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착과수 확인 없이 이전에 실시한 착과수조사 값으로 대체할 수 있다.

P411 1) 농업수입감소보험금 산정

가) 보험기간 내에 보장하는 재해로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한 농업수입감소보험금을 지급한다.

(1) 과거수입형

농업수입감소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X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피해율 = (기준수입 – 실제수입) ÷ 기준수입 ○ 기준수입 = 평년수확량 X 기준가격

(2) 기대수입형

농업수입감소보험금 = 기준수입 X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피해율 = (기준수입 – 실제수입) ÷ 기준수입 ○ 기준수입 = 평년수확량 X max[기준가격, 수확기가격] ○ 실제수입 = (조사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X 수확기가격 ※ 단, 수확기 가격은 기준가격의 1.5배를 한도로 함

나) 기준수입

과거수입형	평년수확량 x 기준가격
기대수입형	※ 기준수입 = 평년수확량 x max[기준가격, 수확기가격]

다) 실제수입

포도, 만감류, 단감	(수확기 조사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x 수확기가격
복숭아	(수확기 조사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병충해감수량) x 수확기가격

※ 기대수입형의 수확기가격은 기준가격의 1.5배를 한도로 함

라) 미보상감수량은 평년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뺀 값에 미보상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평년수확량 보다 수확량이 감소하였으나 보장하는 재해로 인한 감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감소한 수량을 모두 미보상감수량으로 한다.

마)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확량조사를 하지 못하여 수확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농업수입감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바) 자기부담비율은 보험 가입할 때 계약자가 선택한 비율로 한다.

사) 포도의 경우 착색 불량인 송이는 상품성 저하로 인한 손해로 보아 감수량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수확량감소 추가보장 특약의 보험금 산정(포도, 복숭아, 감귤(만감류))

가) 보장하는 재해로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한다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10%) *피해율(포도, 감귤)=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피해율(복숭아)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병충해감수량) ÷ 평년수확량

4) 비가림시설 보험금 산정(포도만 해당)

P413 2. 밭작물(감자(봄, 고랭지, 가을), 고구마, 콩, 마늘, 양파, 양배추(가을, 월동), 옥수수, 배추(고랭지, 가을), 고랭지무, 가을무(일반무))

가. 시기별 조사종류

1) 조사 종류 : 피해사실 확인조사(종합위험방식과 동일), 재파종조사(마늘, 감자(가을재배), 무만 해당), 재정식조사(양배추, 양파, 배추만 해당), 경작불능조사(종합위험방식과 동일), 수확량조사

나. 손해평가 현지조사 방법

1) 피해사실 확인조사

가) 조사 대상 : 대상 재해로 사고 접수 농지 및 조사 필요 농지

나) 대상 재해 :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 병해충(감자 품목만 해당)

다) 조사 시기 : 사고 접수 직후 실시

라) 조사 방법 :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방식 밭작물 품목의 피해사실 확인조사 방식과 같다.

(1) 추가조사 필요 여부 판단 : 보장하는 재해 여부 및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하여 추가 조사(재정식조사, 재파종조사, 경작불능조사 및 수확량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해당 내용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안내하고, 추가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손해평가반 구성 및 추가조사 일정을 수립한다.

2) 재파종조사

가) 적용 품목 : 마늘, 가을무(일반무), 감자(가을재배), 고랭지무

나) 조사 대상 : 피해사실 확인조사 시 재파종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

다) 조사 시기 : 피해사실 확인조사 직후 또는 사고 접수 직후

라) 조사 방법

(1) 마늘, 가을무(일반무), 감자(가을재배) :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방식 밭작물 품목의 재파종 조사 방식과 같다.

(2) 고랭지무 : 종합위험 생산비보장방식 밭작물 무 품목의 재파종 조사 방식과 같다.

3) 재정식조사

가) 적용 품목 : 양배추, 양파, 배추

4) 경작불능조사

가) 적용 품목 : 마늘, 양파, 양배추(가을, 월동), 감자(봄, 고랭지, 가을재배), 고구마, 콩, 옥수수, 배추(고랭지, 가을), 무(고랭지, 일반)

5) 수확량조사

가) 적용 품목 : (감자(봄,고랭지,가을), 고구마, 콩, 마늘, 양파, 양배추(가을, 월동), 옥수수, 배추(고랭지, 가을), 고랭지무, 가을무(일반무))

<품목별 수확량조사 적기> 안 적힌 품목은 동일함

품목	수확량조사 적기
감자(봄재배)	감자의 비대가 종료된 시점(파종일로부터 95일 이후)
감자(고랭지재배)	감자의 비대가 종료된 시점(파종일로부터 110일 이후)

가을무(일반무), 고랭지무	무의 수확적기(결구 형성이 완료된 때)
고랭지배추, 가을배추	배추의 수확 적기(결구 형성이 완료된 때)
보리 삭제	-

<품목별 표본구간 면적조사 방법> 보리 삭제

품목	수확량조사 적기
양배추, 감자, 고구마, 옥수수	이랑 길이(5주 이상) 및 이랑 폭 조사
가을무(일반무), 고랭지무	이랑길이(10주 이상) 및 이랑폭 조사
고랭지배추, 가을배추	이랑길이(6주 이상) 및 이랑폭 조사

<품목별 표본구간 면적조사 방법>

품목	표본구간 면적 조사 방법
감자	표본구간 내 작물을 수확한 후 정상 감자, 병충해별 20% 이하, 21%~40% 이하, 41%~60% 이하, 61%~80% 이하, 81%~100% 이하 발병 감자로 구분하여 해당 병충해명과 무게를 조사하고 최대 지름이 5cm 미만이거나 피해 정도 50% 이상인 감자의 무게는 실제 무게의 50%를 조사 무게로 함
가을무(일반무), 고랭지무	표본구간 내 작물을 수확하여 무청을 제거한 후 무게를 조사
고랭지배추, 가을배추	표본구간 내 작물의 뿌리를 절단하여 수확 (외엽 2겹 내외 제거)한 후 무게를 조사)

P420 다. 보험금 산정방법 및 지급기준

1) 재파종보험금 산정

가) 지급 사유(마늘: 난지형)

나) 지급 사유(감자(가을재배만), 무)

보험기간 내에 보장하는 재해로 면적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고, 재정식한 경우 재정식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하며 1회 지급한다.

지급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 20% × 면적 피해율 *면적 피해율 = 피해면적 ÷ 보험 가입면적

2) 재정식보험금 산정(양배추, 양파, 배추)

3) 경작불능보험금 산정(마늘, 양파, 양배추, 감자, 고구마, 콩, 옥수수, 배추, 무

<자기부담비율에 따른 경작불능보험금>

자기부담비율	경작불능보험금
15%형	보험가입금액의 42%
20%형	보험가입금액의 40%
30%형	보험가입금액의 35%
40%형	보험가입금액의 30%

P421

4) 농업수입감소보험금 산정(옥수수 외 품목)

① 보험기간 내에 보장하는 재해로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한 농업수입감소보험금을 지급한다. 다만, 경작불능보험금 지급대상인 경우 농업수입감소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과거수입형

농업수입감소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x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피해율 = (기준수입 – 실제수입) ÷ 기준수입 ※ 기준수입 = 평년수확량 x 기준가격

(2) 기대수입형

농업수입감소보험금 = 기준수입 x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피해율 = (기준수입 - 실제수입) ÷ 기준수입 ※ 기준수입 = 평년수확량 x max[기준가격, 수확기가격] ※ 수확기 가격은 기준가격의 1.5배를 한도로 함

② 기준수입

과거수입형	평년수확량 x 기준가격
기대수입형	평년수확량 x max[기준가격, 수확기가격]

※ 기대수입형의 수확기 가격은 기준가격의 1.5배를 한도로 함

③ 실제수입

(수확기 조사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x 수확기가격 * 단 감자의 경우 실제수입 = (수확기 조사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병충해감수량) x 수확기가격 ※ 기대수입형의 수확기가격은 기준가격의 1.5배를 한도로 함

④ 미보상감수량은 평년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뺀 값에 미보상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평년수확량 보다 수확량이 감소하였으나 보장하는 재해로 인한 감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감소한 수량을 모두 미보상감수량으로 한다.

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확량조사를 하지 못하여 수확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농업수입감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⑥ 자기부담비율은 보험 가입할 때 계약자가 선택한 비율로 한다.

5) 농업수입감소보험금 산정(옥수수)

① 농업수입감소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에 피해율에서 자기부담비율을 차감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1) 과거수입형

농업수입감소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x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피해율 = (기준수입 – 실제수입) ÷ 기준수입

(2) 기대수입형

농업수입감소보험금 = 기준수입 x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① 재산출한 평년수확량'이 '보험가입 시의 평년수확량'보다 큰 경우 ※ 농업수입감소보험금 = 기준수입 x (가입수확량 ÷ 재산출한 평년수확량) x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② 재산출한 평년수확량'이 '보험가입 시의 평년수확량'보다 작은 경우 ※ '보험가입 시 산정한 평년수확량과 가입수확량'을 보험가입 시 산정한 값 대신 재산출한 평년수확량'으로 함

② 기준수입

과거수입형	평년수확량 x 기준가격
기대수입형	평년수확량 x max[기준가격, 수확기가격]

③ 실제수입

기준수입 – 실제 조사한 손해액

④ 실제수입은 해당 농지의 기준수입과 실제 조사한 농지의 손해액의 차이로 한다.

⑤ 손해액은 기준가격과 수확기가격을 비교하여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단, 기대수입형의 경우 수확기가격은 기준가격의 1.5배를 한도로 한다.

㉠ 기준가격 ≥ 수확기가격

손해액 = (기준가격 – 수확기가격) x (평년수확량 – 피해수확량) + (기준가격 x 피해수확량)

㉡ 기준가격 < 수확기가격

손해액 = 기준가격 x 피해수확량

㉢ 피해수확량은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방식 옥수수 품목과 같은 방법으로 산출한다.

㉣ 수확량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조사한 피해수확량이 없는 경우 피해수확량은 0으로 한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확량조사를 하지 못하여 수확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농업수입감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P421 이후 내용 추가

3. 논작물(벼, 보리)

가. 시기별 조사종류

조사종료		조사시기
예찰조사		사고접수 전
피해사실확인조사		사고접수 직후
이앙·직파불능 조사(벼만 해당)		이앙한계일(7월 31일) 이후
재이앙·재직파 조사(벼만 해당)		사고 접수 후 ~ 재이앙 직후
경작불능조사		사고 접수 후 ~ 수확 개시 시점
수확불능확인조사(벼만 해당)		수확포기가 확인되는 시점
수확량조사 (조사료용 벼 제외)	수량요소(벼만 해당)	수확 전 14일 전후
	표본	알곡이 여물어 수확이 가능한 시기
	전수	수확 시

나. 손해평가 현지조사 방법

1) 예찰조사

사고가 접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 목적의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한다.

가) 가입 전 사고발생 여부 확인

나)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여부 확인

다) 보상하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수확량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확인

2) 피해사실 확인조사

가) 조사 대상 : 대상 재해로 사고 접수 농지 및 조사 필요 농지

나) 대상 재해 :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

다) 조사 시기 : 사고 접수 직후 실시

라) 조사 방법 : 「피해사실 "조사 방법" 준용」

(1) 추가조사 필요 여부 판단 : 보장하는 재해 여부 및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하여 추가조사(재정식조사, 재파종조사, 경작불능조사 및 수확량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해당 내용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안내하고, 추가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손해평가반 구성 및 추가조사 일정을 수립한다.

3) 이앙·직파불능조사

가) 적용 품목 : 벼

나) 조사 대상 : 피해사실 확인조사 시 이앙·직파불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

다) 조사 시기 : 이앙한계일(7월 31일) 이후

라) 조사 방법 :

(1) 보장하는 재해 여부 심사 : 농지 및 작물 상태 등을 감안하여 보장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확인하며, 필요시에는 이에 대한 근거자료(피해사실 확인조사 참조)를 확보할 수 있다.

(2) 실제 경작면적 확인 : GPS 면적측정기 또는 지형도 등을 이용하여 보험 가입 면적과 실제 경작면적을 비교한다. 이때 실제 경작면적이 보험 가입 면적 대비 10%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는 계약 사항을 변경해야 한다.

(3) 이앙·직파불능 판정기준 : 보상하는 재해로 인하여 이앙한계일(7월 31일)까지 해당농지 전체를 이앙·직파하지 못한 경우 이앙·직파불능피해로 판단한다

(4) 통상적인 영농활동 이행여부 확인: 대상 농지에 통상적인 영농활동(논둑정리, 논갈이, 시비, 제초제 살포 등)을 실시했는지를 확인한다.

4) 재이앙·재직파조사

가) 적용 품목 : 벼

나) 조사 대상 : 피해사실 확인조사시 재이앙·재직파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

다) 조사 시기 : 사고 접수 후 ~ 재이앙 직후

라) 조사 방법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한다.

(1) 보장하는 재해 여부 심사 : 농지 및 작물 상태 등을 감안하여 보장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확인하며, 필요시에는 이에 대한 근거자료(피해사실 확인조사 참조)를 확보할 수 있다.

(2) 실제 경작면적 확인 : GPS 면적측정기 또는 지형도 등을 이용하여 보험 가입 면적과 실제 경작면적을 비교한다. 이때 실제 경작면적이 보험 가입 면적 대비 10%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는 계약 사항을 변경해야 한다.

(3) 재이앙·재직파 보험금 지급 대상 여부 조사(재이앙·재직파 전(前)조사)

(가) 피해면적 확인 : GPS 면적측정기 또는 지형도 등을 이용하여 실제 경작면적 대비 피해면적을 비교 및 조사한다.

(나) 피해면적의 판정 기준

① 묘가 본답의 바닥에 있는 흙과 분리되어 물 위에 뜬 면적

② 묘가 토양에 의해 묻히거나 잎이 흙에 덮여져 햇빛이 차단된 면적

③ 묘는 살아 있으나 수확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 면적

(4) 재이앙·재직파 이행완료 여부 조사(재이앙·재직파 후(後)조사) : 재이앙·재직파 보험금 지급 대상 여부 조사(전(前)조사)시 재이앙·재직파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확인된 농지에 대하여, 재이앙·재직파가 완료되었는지를 조사한다. 피해면적 중 일부에 대해서만 재이앙·재직파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이앙·재직파가 이루어지지 않은 면적은 피해 면적에서 제외한다.

(5) 농지별 상황에 따라 재이앙·재직파 전조사가 어려운 경우, 최초이앙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최초이앙 시기와 피해사실에 대한 확인을 하여야 한다.

5) 경작불능조사

가) 적용 품목 : 벼, 보리

나) 조사 대상 : 피해사실 확인조사 시 경작불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 또는 사고 접수 시 이에 준하는 피해가 예상되는 농지

다) 조사 시기 : 피해사실 확인조사 직후 또는 사고 접수 직후

라) 경작불능 보험금 지급 대상 여부 조사(경작불능 전(前)조사)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한다.

(1) 보장하는 재해 여부 심사 : 농지 및 작물 상태 등을 감안하여 보장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확인하며, 필요시에는 이에 대한 근거자료(피해사실 확인조사 참조)를 확보한다.

(2) 실제 경작면적 확인 : GPS 면적측정기 또는 지형도 등을 이용하여 보험 가입 면적과 실제 경작면적을 비교한다. 이때 실제 경작면적이 보험 가입면적 대비 10%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는 계약 사항을 변경해야 한다.

(3) 식물체 피해율 조사 : 목측 조사를 통해 조사 대상 농지에서 보장하는 재해로 인한 식물체 피해율이 65% (분질미(가루쌀)는 60%이상)이상인지 여부를 조사한다.

(4) 계약자의 경작불능보험금 신청 여부 확인 :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인 경우 계약자에게 경작불능보험금 신청 여부를 확인한다.

(5) 수확량조사 대상 확인 : 식물체 피해율이 65%(분질미(가루쌀)는 60%) 미만이거나 (벼, 보리만 해당),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 되어도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보리만 해당)에는 향후 수확량조사가 필요한 농지로 결정한다.

(6) 산지폐기 여부 확인(경작불능 후(後)조사, 벼, 보리만 해당) : 이전 조사에서 보상하는 재해로 식물체 피해율이 65%(분질미(가루쌀)는 60%) 이상인 농지에 대하여, 산지폐기 여부를 확인한다.

6) 수확량조사

가) 적용 품목 : 벼, 보리

나) 조사 대상 : 피해사실확인조사 시 수확량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에 대하여 수확량조사를 실시

한다.

다) 손해조사 방법 : 동일 농지에 대하여 복수의 조사방법을 실시한 경우 피해율 산정의 우선순위는 전수조사, 표본조사, 수량요소조사 순으로 적용한다.

(1) 보장하는 재해 여부 심사 : 농지 및 작물 상태 등을 감안하여 보장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확인하며, 필요시에는 이에 대한 근거자료(피해사실 확인조사 참조)를 확보할 수 있다.

(2) 경작불능보험금 대상 여부 확인(벼만 해당) : 식물체 피해율이 65%(분질미(가루쌀)는 60%) 이상인 경작불능보험금 대상인지 확인한다.

(3) 면적 확인

(가) 실제 경작면적 확인 : GPS 면적측정기 또는 지형도 등을 이용하여 보험 가입 면적과 실제 경작면적을 비교한다. 이때 실제 경작면적이 보험 가입 면적 대비 10%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는 계약 사항을 변경해야 한다.

(나) 수확불능(고사)면적 확인 : 보장하는 재해로 인하여 해당 작물이 수확될 수 없는 면적을 확인한다.

(다) 타작물 및 미보상 면적 확인 : 해당 작물 외의 작물이 식재되어 있거나 보장하는 재해 이외의 사유로 수확이 감소한 면적을 확인한다.

(라) 기수확면적 확인 : 조사 전에 수확이 완료된 면적을 확인한다.

(마) 조사대상 면적 확인 : 실제경작면적에서 고사면적, 타작물 및 미보상면적, 기수확면적을 제외하여 조사 대상 면적을 확인한다.

(4) 수확불능 대상여부 확인(벼만 해당) : 벼의 제현율이 65%(분질미(가루쌀)는 70%) 미만으로 정상적인 출하가 불가능한지를 확인한다. 단, 식물체 피해율이 65%(분질미(가루쌀)는 60%)이상인 경작불능보험금 대상인 경우에는 수확불능 대상에서 제외한다.

(5) 조사 방법 결정 : 조사 시기 및 상황에 맞추어 적절한 조사 방법을 선택한다.

(가) 수량요소조사 방법(벼만해당)

① 표본포기 수 : 4포기(가입면적과 무관함)

② 표본포기 선정 : 재배방법 및 품종 등을 감안하여 조사 대상 면적에 동일한 간격으로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표본 포기를 선정한다. 다만, 선정한 포기가 표본으로 부적합한 경우(해당 포기의 수확량이 현저히 많거나 적어서 표본으로 대표성을 가지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가까운 위치의 다른 포기를 표본으로 선정한다.

③ 표본포기 조사 : 선정한 표본 포기별로 이삭상태 점수 및 완전낟알상태 점수를 조사한다.

<이삭상태 점수표>

포기당 이삭수	점수
16미만	1

16이상	2

<완전낟알상태 점수표>

이삭당 완전낟알수	점수
51개 미만	1
51개 이상 61개 미만	2
61개 이상 71개 미만	3
71개 이상 81개 미만	4
81개 이상	5

④ 수확비율 산정 : 표본 포기별 이삭상태 점수(4개) 및 완전낟알상태 점수(4개)를 합산한다. 합산한 점수에 따라 조사수확비율 환산표에서 해당하는 수확비율 구간을 확인한다. 해당하는 수확비율구간 내에서 조사 농지의 상황을 감안하여 적절한 수확비율을 산정한다.

<조사수확비율 환산표>

점수 합계	조사수확비율(%)	점수 합계	조사수확비율(%)
10점 미만	0% ~ 20%	16점 ~ 18점	61% ~ 70%
10점 ~ 11점	21% ~ 40%	19점 ~ 21점	71% ~ 80%
12점 ~ 13점	41% ~ 50%	22점 ~ 23점	81% ~ 90%
14점 ~ 15점	51% ~ 60%	24점 이상	91% ~ 100%

⑤ 피해면적 보정계수 산정: 피해정도에 따른 보정계수를 산정한다.

<피해면적 보정계수>

피해 정도	피해면적 비율	보정계수
매우 경미	10% 미만	1.2
경미	10% 이상 30% 미만	1.1
보통	30% 이상	1

⑥ 병해충 단독사고 여부 확인: 농지의 피해가 자연재해, 조수해 및 화재와는 상관없이 보상하는 병해충만으로 발생한 병해충 단독사고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이 때, 병해충 단독사고로 판단될 경우에는 가장 주된 병해충명을 조사한다.

(나) 표본조사 방법

① 적용 품목 : 벼, 보리

② 표본구간수 산정 : 조사대상 면적 규모에 따라 적정 표본구간수 이상의 표본구간수를 산정한다. 다만, 가입면적과 실제 경작면적이 10% 이상 차이가 나 계약 변경 대상일 경우에는 실제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표본구간수를 산정한다.

③ 표본구간 선정 : 선정한 표본구간수를 바탕으로 재배 방법 및 품종 등을 감안하여 조사 대상 면적에 동일한 간격으로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표본구간을 선정한다. 다만, 선정한 구간이 표본으로 부적합한 경우(해당 지점 작물의 수확량이 현저히 많거나 적어서 표본으로 대표성을 가지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가까운

위치의 다른 구간을 표본구간으로 선정한다.

④ 표본구간 면적 및 수량 조사

표본구간 면적(벼)	표본구간마다 4포기의 길이와 포기 당 간격을 조사한다.(단, 농지 및 조사 상황 등을 고려하여 4포기를 2포기로 줄일 수 있다)
표본구간 면적(보리)	점파의 경우 표본구간마다 4포기의 길이와 포기 당 간격을 조 사하고, 산파이거나, 이랑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규격의 테(50cm × 50cm)를 사용한다.(단, 농지 및 조사 상황 등을 고려하여 4포기를 2포기로 줄일 수 있다)
표본 중량 조사	표본구간의 작물을 수확하여 해당 중량을 측정한다.
함수율 조사	수확한 작물에 대하여 함수율 측정을 3회 이상 실시하여 평균 값을 산출한다.

(다) 전수조사 방법

① 적용 품목 : 벼, 보리

② 전수조사 대상 농지 여부 확인 : 전수조사는 기계수확(탈곡 포함)을 하는 농지에 한한다.

③ 작물의 중량 조사 : 대상 농지에서 수확한 전체 작물의 중량을 조사 하며, 전체 중량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콤바인, 톤백, 콤바인용 포대, 곡물적재함 등을 이용하여 중량을 산출한다.

④ 함수율 조사 : 수확한 작물에 대하여 함수율 측정을 3회 이상 실시하여 평균값을 산출한다.

⑤ 병해충 단독사고 여부 확인(벼만 해당) : 농지의 피해가 자연재해, 조수해 및 화재와는 상관없이 보상하는 병해충만으로 발생한 병해충 단독사고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이 때, 병해충 단독사고로 판단될 경우에는 가장 주된 병해충명을 조사한다.

7) 수확불능확인조사(벼만 해당)

수확량조사 시 수확불능 대상 농지(벼의 제현율이 65%(분질미는 70%) 미만으로 정상적인 출하가 불가능한 농지)로 확인된 농지에 대하여 실시하는 조사로, 조사 시점은 수확포기가 확인되는 시점으로 한다.

가) 조사 시기 : 수확포기가 확인되는 시점

나) 수확불능 보험금 지급 대상 여부 조사

(1) 보장하는 재해 여부 심사 : 농지 및 작물 상태 등을 감안하여 보장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확인하며, 필요시에는 이에 대한 근거자료(피해사실 확인조사 참조)를 확보한다.

(2) 실제 경작면적 확인 : GPS 면적측정기 또는 지형도 등을 이용하여 보험가입 면적과 실제 경작면적을 비교한다. 이때 실제 경작면적이 보험 가입면적 대비 10%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는 계약 사항을 변경해야 한다.

(3) 수확불능 대상여부 확인 : 벼의 제현율이 65%(분질미는 70%) 미만으로 정상적인 출하가 불가능한지를 확인한다.

(4) 수확포기 여부 확인 :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수확을 포기한 것으로 한다.

(가)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 수확을 하지 않은 경우

(나) 목적물을 수확하지 않고 갈아엎은 경우(로터리 작업 등)

(다) 대상 농지의 수확물 모두가 시장으로 유통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경우

다. 보험금 산정방법 및 지급기준

1) 이앙·직파불능보험금 산정(벼만 해당)

가) 지급 사유 : 보험기간 내에 보장하는 재해로 농지 전체를 이앙·직파하지 못하게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5%를 이앙·직파불능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지급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 15%

나) 지급 거절 사유 : 논둑 정리, 논갈이, 비료 시비, 제초제 살포 등 이앙 전의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은 농지에 대해서는 이앙·직파불능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 보험계약의 소멸 : 이앙·직파불능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농지에 대한 보험계약은 소멸되며, 이 경우 환급보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2) 재이앙·재직파보험금 산정(벼만 해당)

가) 지급 사유 : 보험기간 내에 보장하는 재해로 면적 피해율이 10%를 초과하고, 재이앙(재직파)한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한 재이앙·재직파 보험금을 1회 지급한다.

지급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 25% × 면적 피해율 ※면적 피해율 = 피해면적 ÷ 보험가입면적

3) 경작불능보험금 산정(벼, 보리)

가) 지급 사유 : 보험기간 내에 보장하는 재해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한 경우 경작불능보험금은 자기부담비율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일정 비율로 계산한다.

<자기부담비율에 따른 경작불능보험금>

자기부담비율	경작불능보험금
15%형	보험가입금액의 42%
20%형	보험가입금액의 40%
30%형	보험가입금액의 35%
40%형	보험가입금액의 30%

나) 지급거절 사유 : 보험금 지급 대상 농지 품목이 산지폐기 등의 방법을 통해 시장으로 유통되지 않게 된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경작불능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 경작불능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농지에 대한 보험계약은 소멸된다. 이 경우 환급보험료는 발생하지 않으며, 농업수입감소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수확불능보험금 산정(벼만 해당)

가) 지급 사유 : 보험기간 내에 보장하는 재해로 보험의 목적인 벼(조곡) 제현율이 65%(분질미의 경우 70%) 미만으로 떨어져 정상 벼로서 출하가 불가능하게 되고, 계약자가 수확불능보험금을 신청한 경우 산정된 보험가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확불능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자기부담비율에 따른 수확불능보험금>

자기부담비율	경작불능보험금
15%형	보험가입금액의 57%
20%형	보험가입금액의 55%
30%형	보험가입금액의 50%
40%형	보험가입금액의 45%

나) 지급거절 사유

(1) 경작불능보험금의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재해로 인해 식물체 피해율이 65%(분질미의 경우 60%) 이상인 경우에는 수확불능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하다.

(2) 보험금 지급 대상 농지 벼가 산지폐기 등으로 시장 유통 안 된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수확불능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5) 농업수입감소보험금 산정

가) 보험기간 내에 보장하는 재해로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한 농업수입감소보험금을 지급한다.

(1) 과거수입형

농업수입감소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피해율 = (기준수입 – 실제수입) ÷ 기준수입 ※ 기준수입 = 평년수확량 x 기준가격

(2) 기대수입형

농업수입감소보험금 = 기준수입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피해율 = (기준수입 – 실제수입) ÷ 기준수입 ※ 기준수입 = 평년수확량 x max[기준가격, 수확기가격]

나) 기준수입

과거수입형	평년수확량 x 기준가격
기대수입형	※ 기준수입 = 평년수확량 x max[기준가격, 수확기가격] * 수확기가격은 기준가격의 1.5배를 한도로 함

다) 실제수입

(수확기 조사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x 수확기가격 ※ 기대수입형의 수확기가격은 기준가격의 1.5배를 한도로 함

라) 미보상감수량은 평년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뺀 값에 미보상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평년수확량 보다 수확량이 감소하였으나 보장하는 재해로 인한 감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감소한 수량을 모두 미보상감수량으로 한다.

마)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확량조사를 하지 못하여 수확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농업수입감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바) 자기부담비율은 보험 가입할 때 계약자가 선택한 비율로 한다.

6) 병충해보장특별약관(벼만)

재이앙·재직파보장, 경작불능보장, 수확불능보장, 농업수입감소보장